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Hyundai Insurance

꼼꼼하고 든든한 도로 위의 매니저
하이카자동차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계약체결 시 운전가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운전자한정 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제한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 기명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 부부 | 부부+자녀 | 부부+1人 | 기족 | 누구나 |
| 피보험자 | +자녀 | +1人 | | | | | |

연령한정 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제한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 만 21세 이상 | 만 22세 이상 | 만 24세 이상 | 만 26세 이상 | 만 28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상 | 만 43세 이상 | 만 48세 이상 |

※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행 중 사고 시 대인배상 | 담보에 한해서만 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차명, 차량번호, 주민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 주소는 각종 안내자료 등 우편물이 전달되어야 하오니 정확해야 합니다.



계약변경 사항이 있다면 연락해 주세요.

-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을 맺은 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나 **고객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콜센터

전국(지역번호 구분없이)

1899-6782 (보험가입 및 안내)

1588-5656 (고장출동 및 사고접수)



※ 同 Guide Book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01

보험약관이란?



- ▶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 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0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북

▶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보험약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 보통약관 : 자동차보험의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0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 QR(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 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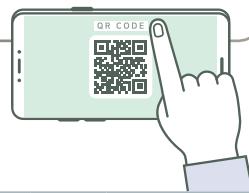
전국 지점



0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보통약관 기준)

- ▶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① 보상하는 손해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상하는 손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 대인배상 I | 제3조 | p.42 | |
| | 대인배상 II·대물배상 | 제6조 | p.43 | |
| | 자기신체사고 | 제12조 | p.46 | |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제17조 | p.48 | |
| | 자기차량손해 | 제21조 | p.49 | |
| ②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 대인배상 I | 제5조 | p.42 | |
| | 대인배상 II·대물배상 | 제8조 | p.43 | |
| | 자기신체사고 | 제14조 | p.46 | |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제19조 | p.48 | |
| | 자기차량손해 | 제23조 | p.49 | |
| ③ 청약 철회 | 제41조(청약 철회) | | p.59 | |
|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 p.60 | |
| ⑤ 계약 후 알릴 의무 |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 p.60 | |
| ⑥ 사고발생 시 의무 |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 p.60 | |
| ⑦ 보험계약의 취소 |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 | p.62 | |
| ⑧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 p.62 | |
| ⑨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 p.63 | |



0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 ▶ 아래 5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요약서
p.5

2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의 정의, 약관본문 내 용어설명 및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p.38

3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p.2

4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p.146

5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06

기타 문의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direct.hi.co.kr>), 고객 콜센터(1899-6782)로 문의 가능
-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이 요약서는 그림, 도표, 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 | |
|--|-----------------------|----|
| | 의무보험 | 07 |
| | 가입자 유의사항 | 08 |
| | 자동차보험료 산정방법 | 14 |
| | 자동차보험의 구성-보통약관 / 특별약관 | 18 |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28 |
| | Q&A | 30 |
| | 자동차보험 약관 쉽게 찾는 법 | 32 |

01

'의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인배상 |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배상 | 2천만원

02

'의무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나요?

- ▶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보험 | 자가용자동차 | |
|--------|---------|--------|
| 미가입 기간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 10일 이내 | 10,000원 | 5,000원 |
| 초과 1일당 | 4,000원 | 2,000원 |
| 최고한도 | 60만원 | 30만원 |

예시

미가입 기간이 **62일인 경우 과태료는?**

▶ 대인배상 | : 1만원 + (4,000원 × 52일)
= 218,000원
대물배상 : 5천원 + (2,000원 × 52일)
= 109,000원
합계 : 327,000원

03

그렇다면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 ▶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 내용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발생시 초과 손해에 대하여는 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 의무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법규해설 147쪽)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01

청약하신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 피보험자의 성명, 주소, 연령, 연락처 등 인적정보에 관한 사항
- ▶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 등 차량에 관한 사항
-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 ▶ 보장종목별 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사항
- ▶ 특약에 관한 사항

* 만약,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 담당자나 고객 **콜센터(1899-6782)**로 연락주시어 계약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자필서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단,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 녹취, 공인인증 등의 방식을 포함합니다.)

02

보험계약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나요?

- ▶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된 동일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사항
- ▶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
- ▶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사항 등

* 보험가입시 청약 내용은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분쟁 사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또한 상품설명서 등 추가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 및 약관 수령시 계약 내용이 실제 청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어 사고 처리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중 계약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계약 담당자나 **고객 콜센터(1899-6782)**로
지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고객님께 발송되는 각종 안내문(만기안내장 등) 수령을 위해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꼭 알려주세요



운전가능자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운전가능한 운전자의 범위 또는 연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운전자한정 / 연령한정 특약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일정 기간 운전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약관 7.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 참조



새차를 구매하였거나 교체한 경우

새로운 차를 구매하여 기존 차량과 대체한 경우 차량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등 새로운 부속품이 추가된 경우

자동차에 장착된 기본 사양 이외에 새로운 부속품이 추가된 경우 부속품 종류와 가액을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요 분쟁 사례

자동차 사고로 네비게이션 등 부속품이 파손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 ▶ 네비게이션 등 차량에 새로운 부속품을 장착한 경우 보험사에 부속품 종류와 가액을 사고발생 전에 알려 계약내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부속기액 포함시 보험료는 변동되며 사고시 해당 부속품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속품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형제·자매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 ▶ 가족한정 특약의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까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도록 보험계약을 변경하셔야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 (자동차 소유주)

기명피보험자 + 배우자¹⁾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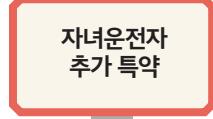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자녀(사위, 며느리)



자녀(사위, 며느리)

※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특약', '부부한정 특약' 가입자만 추가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지정1인³⁾(타인)

※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특약', '부부한정 특약' 가입자만 추가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유의사항

- 1) 배우자 :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2)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형제·자매·남매, (외)조부모, 손자·녀, 동거인, 고용인 등
- 3) 지정1인 : 가족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지정 가능



보험계약 만료(종료) 전 안내

-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 법규해설 158쪽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님께 보험계약 만료(종료) 전 2회에 걸쳐 만료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안내시기 | 안내대상 | 안내방법 |
|-------|---------------|------------|------------|
| 1차 안내 | 만료일 75일~30일 전 | 계약자/기명피보험자 | 모바일 / 우편발송 |
| 2차 안내 | 만료일 30일~10일 전 | 기명피보험자 | |

*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안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관련 안내장을 전자적방법으로 안내해 드리는 Hicar Green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모바일 메신저 등의 메시지서비스로 안내해 드립니다.



Eco 마일리지 특약 정산

- ▶ 최종 주행거리 사진 등록 유효기간 : 만료일 45일 전 ~ 만료일 이후 15일까지

- ▶ 보험기간 : '20.9.1 ~ 21.9.1, 최초사진 송부 : '20.8.16 / 최종사진 송부 : '21.8.1
- ▶ 최초 주행거리 : 3,500km, 최종 주행거리 8,500km
- ▶ 일 평균 주행거리 : $(8,500\text{km} - 3,500\text{km}) \div ('21.8.1 ~ '20.8.16 350\text{일}) = 14.3\text{km}$
- ▶ 연 환산 주행거리 : $14.3\text{km} \times 365\text{일} = 5,220\text{km}(7,000\text{km} \text{ 이하 할인율 적용})$



주요 분쟁 사례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여 보험갱신을 못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당사는 보험가입 시 등록된 인적정보를 기준으로 기명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만기 안내하기 때문에 주소, 연락처 등 인적정보가 변동된 경우 자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시 운전자 대처 방법



차량정지 후 부상자 구호

- 사고발생 후 최단거리에서 즉시 정차 후 사고 확인
- 차량 탑승자 및 타차 운전자 등 부상 상태 확인 후 응급조치 (필요시 119 즉시 신고)



사고 관련 정황증거 확보

- 사고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촬영 (근거리 / 원거리 촬영, 휴대폰 / 카메라 등)
- 사고 위치 표시 및 목격자 확보
(목격자 동의 후 인적사항, 연락처 등 요청)
* 블랙박스 보유자라면 블랙박스 영상 확보



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 추가 사고발생 방지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가까운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차량 이동



사고 신고 및 보험사 통보

- 사고일시, 장소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서와 보험사에 통보
* 사고 경 중에 따라 해당 절차가 가장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분쟁 사례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한 사고의 세부 내용에 따라 수정요소들을 가감하여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유의사항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절차

Hi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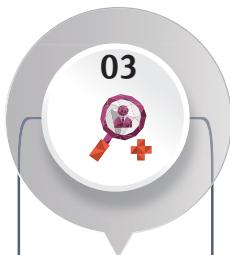
사고 통보
콜센터

1588-5656
(내선번호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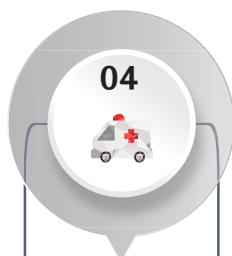
사고접수 및 보상
담당자 배정

접수번호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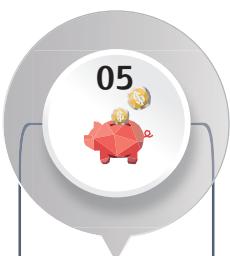
보상 담당자
사고조사

사고 세부 내용 파악



피해상황 확인
(손해액 산정)

병원 치료 / 정비공장
수리 과정 확인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병원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기타비용 등



보험처리
종결 안내

사고처리 결과
고객에게 최종 안내

주요 분쟁 사례

자동차 사고로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못받나요?

- ▶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 때문에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상호협정을 맺어 우선 보상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보험료 계산

- ▶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특별계약
적용요율



물적사고 할증기준 요율



특별요율



사고건수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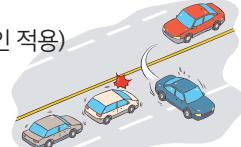


| 구 분 | 내 용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특약요율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특별계약 적용요율 |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 보험료를 회피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 |
| 물적사고 할증기준 요율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100·150·200만원 중 계약자가 선택한 가입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 발생시

- ▶ 사례 :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 상해등급 12등급 부상
(현행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직전 3년 무사고로 사고건수요율 할인 적용)



보험료 할증 요인

-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을 상이)
-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교통법규 위반시

- ▶ 사례 : 신호위반 1회



보험료 할증 요인

신호위반 1회로 가입자특성요율 내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할증 적용

- 1) **할증 1그룹** : 무면허운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음주운전 2회 이상 등
- 2) **할증 2그룹** : 음주운전 1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주요 분쟁 사례

- ▶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 1회로 적용되는 할증 요인은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요율입니다.
직전 3년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을 받지만, 사고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 될 수 있습니다.
- ▶ 경미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이 소액 1건이라면 자동차보험 갱신 전에 사고로 인한 할증 금액과 사고로 지급된 지급보험금을 비교하여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로 환입하고 보험사고 처리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 후에는 사고 취소 불가)



무사고자 /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 요인

1)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간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

2) 교통법규 준수시가입자특성요율 내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할인



할인형 특약 가입자



Eco 마일리지 특약

→ 연간 주행거리가 15,000km 이하인 경우 구간별 보험료 할인

| 연간 주행거리 |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
|---------------------------|-------------|---------------|
| 3,000km 이하 | 36% | 38% |
| 3,000km 초과 ~5,000km 이하 | 28% | 31% |
| 5,000km 초과 ~7,000km 이하 | 22% | 25% |
| 7,000km 초과 ~10,000km 이하 | 17% | 21% |
| 10,000km 초과 ~12,000km 이하 | 7% | 10% |
| 12,000km 초과 ~ 15,000km 이하 | 4% | 7% |

운행정보 확인장치 : 차량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커넥티드카 등)



제출서류 >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차량 계기판 및 자동차번호판 사진) /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확인서)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 7세(만 6세)이하 자녀가 있거나 태아를 임신한 경우 가입조건별 보험료 할인

| 가입조건 | 태아 임신 고객 | 7세 이하 자녀 고객 |
|------------------------------|----------|-------------|
| 기명1인한정 또는 부부한정 특약 가입시 | 14% | 10% |
| 가족한정 특약 가입시 또는 운전자한정 특약 미가입시 | 10% | 2% |

주) 1. 지정1인운전자 추가특약 가입한 경우에는 "가족한정특약 가입시 또는 운전자한정 특약 미가입시" 요율 적용
2. 자녀운전자 추가특약 가입한 경우에는 "가족한정특약 가입시 또는 운전자한정 특약 미가입시" 요율 적용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등(당사 장기보험 가입고객은 서류제출 생략 가능)

3 자동차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주요 할인 안내

Hicar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

- ☞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에 대하여 보험료 7.1% 할인



커넥티드카

자동차 출고시 장착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사고 및 운행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차량

자동차제조사별 서비스명칭



제출서류 >> 자동차 제조사가 발급한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확인서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



- ☞ 고객 운행정보 DATA를 활용,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 9% 할인(현대차 BlueLink, 기아차 UVO 서비스, 제네시스 가입 차량 대상)

※ 현대차 BlueLink, 현대 제네시스, 기아차 UVO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한번으로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 ECO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가능(전용망으로 자동 Check)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할인 특약

- ☞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 2.2% 할인(차량연식이 신차~12년전이하)



제출서류 >> 블랙박스 장착 사진, 자동차번호판 사진

차선이탈 /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

- ☞ 신차 출고시 해당 장치가 기본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경우 보험료 할인 차선이탈 경고장치 4.3%, 전방충돌 경고장치 1.5% 할인



제출서류 >> 자동차번호판 사진, 차선이탈 / 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 사진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



- ☞ 만 65세 이상 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능력진단 1~3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료 5% 할인
☞ 만 75세이상 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험료 3.6% 할인



제출서류 >> 교통안전교육 이수 또는 수료 확인서

나눔특약(서민우대 자동차보험)

- ☞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생계형 중고차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일정기준 이상의 장애인인 경우 보험료 할인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보험의 기본구성

- ▶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 종목별 보상하는 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내용으로 구성된 보통약관과, 보통약관에서 보장받는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한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나:
자기신체사고

내 차:
자기차량손해

상대방 차:
대물

상대방:
대인 I·II

사람이 다친 경우

차량이 파손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배상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고객님에 대한 보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운전자한정 특약(운전자 범위한정 특약,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등)
- 보험료 할인형 특약 (ECO 마일리지 특약,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등)
- 나와 소중한 가족에 대한 보장 확대 특약 (상해간병비·사망담보 특약, 자녀 사고 피해 지원 특약)
- 차량 손해 보장 강화를 위한 특약 (렌트비용지원 특약, 차량운반비용담보 특약 등)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법률비용 지원 특약

4 자동차보험의 구성 - 보통약관

Hicar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보상하는 손해

-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 구분 | 보상한도(피해자 1인당) | |
|----------|---|---------------------|
|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
| 사망 보험금 | 최대 1억 5천만원 | |
| 부상 보험금 | 최대 3천만원 | 대인배상 I 을 초과하는 손해 |
| 후유장애 보험금 | 최대 1억 5천만원 | |
| 보험금의 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보험금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보험금 :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 후유장애 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 |



유의사항

대인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10억원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 만 가입된 경우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인배상 II (가입금액 : 무한) 가입을 통해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보상
*가입금액 2천만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 구 분 | 내 용 |
|---------|--|
| 보험금의 종류 |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
| 가입금액 | 2/3/5/7천만원, 1/2/3/5/10억원 中 선택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내용)

-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200만원 한도 내 실제 손해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보상하는 손해

-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보상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보험가입금액

| 구분 | 가입금액 | |
|-------------|------------------------------|----------------------------|
|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 사망/ 후유장애 |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 / 1억원 中 선택 | 1억 / 2억 / 3억 / 5억원 中 선택 |
| 부상 |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원 中 선택 | 2천만 / 3천만 / 5천만 / 1억원 中 선택 |



보험금 지급 예시

- ▶ 사례 : 자동차사고로 운전자가 상해급수 12등급 부상으로 치료비 100만원인 경우

| 구 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
| 보상하는손해 (부상의 경우) | 실제 발생한 치료비 지급 (가입금액 / 상해급수 한도 내) |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 손해액 지급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 등) |
| 치료비 | 60만원 (12급 보상한도) | 100만원 |
| 위자료 | 보상안함 | 15만원(12급 부상 위자료) |
| 휴업손해 | 보상안함 | 85만원 (10일입원으로 휴업기간에 발생한 수입감소액 100만원시 100만원 X 85%) |
| 합계 | 60만원 지급 | 200만원 지급 |

※ 위 사례는 예시로써 가입금액 등에 따라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보험의 구성 - 보통약관

Hicar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 ▶ 자동차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수리비 보상
- ▶ 도난의 경우 도난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자기부담금

-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시 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 구분 | 자기부담금 | | | |
|----|----------------------------|----------|-------|-------|
| | 손해액의 20% | 손해액의 30% | | |
| 최소 | 5/10/15/20만원 ^{주)} | 3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최대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주) 5/10/15/2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상이함.



자기부담금 예시

조건 1. 수리비 200만원, 손해액의 20% 가입시

| | |
|---------------|----------------------|
| 수리비 | 200만원 |
| 손해액의 20% | 40만원 (=200만원X20%) |
| 자기부담금 최저~최고한도 | 20만원~50만원 |
| 자기부담금 | 40만원* |

*40만원이 최저 20만원과 최고한도 50만원 사이에 있으므로
자기부담금은 40만원



조건 2. 수리비 400만원, 손해액의 30% 가입시

| | |
|---------------|-----------------------|
| 수리비 | 400만원 |
| 손해액의 30% | 120만원 (=400만원X30%) |
| 자기부담금 최저~최고한도 | 30만원~100만원 |
| 자기부담금 | 100만원* |



*120만원이 최고한도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자기부담금은 100만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하는 손해

- ▶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행중 발생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
- ▶ 보험가입금액 : 2억, 5억



무보험자동차의 정의

1. 의무보험(대인배상 I)만 가입한 자동차
2.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위배한 경우
3. 가해차량에 가입된 대인배상 II 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4.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참고



내가 운전한 친구차량이 친구차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 ▶ 내 보험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 자동가입)

| | |
|-----------|---|
| 보상하는 손해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특약 가입자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만 가능) |
| 지급보험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 ·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물배상 지급기준으로 보상(자기부담금 30만원) |
| 다른자동차의 정의 |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 경·4종화물차 간에는 동일 차종으로 봄 |

- ▶ 운전가능자 범위를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내 자녀운전 추가 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와 소중한 가족에 대한 보장 확대』

상해간병비·사망담보 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①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사망 3천만원, 후유장애 1~10급시 1천만원~3천만원

② 상해간병비 지원금

부상 1~10급 시 50만원~500만원

상급병실·성형·치아보철 지원 특약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① 상해병실료 지원금

상급병실(특실포함) 입원시 기준병실과 차액을 30일 500만원 한도 보상

② 성형비용 지원금

안면부, 상지, 하지 성형부위 1cm당 10만원(1회, 1천만원 한도)

③ 치아보철비용 지원금

치아보철 1대당 20만원

자녀 사고 피해 지원 특약

피보험자의 자녀가 만18세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 사고 또는 보행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①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사망 3천만원, 후유장애 1~10급인 경우 1천만원~3천만원

② 자녀간병비 지원금

부상 1~10급 시 50만원~500만원

③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성장판과 관련된 골절인 경우 500만원

④ 스쿨존 사고 피해 지원금

사고장소가 스쿨존으로 사망·후유장애시 위 '①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을 2배 지급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등 피해 지원 특약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마약·약물운전사고로 죽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사망 3천만원, 후유장애 1~10급시 1천만원~3천만원 보상

『차량손해 보장강화를 위한 필수 선택』

렌트비용지원 특약

렌트시 : 동종의 국산 대여차 실비 보상(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
 비렌트시 :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 보상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

| (초)소형 | 중형 | 대형 | | 다인승 | 기타 |
|------------|------------|------------|------------|----------|----------|
| 1,600cc 이하 | 2,000cc 이하 | 2,800cc 이하 | 2,800cc 초과 | 10인승 이하 | |
| 70,000원 | 110,000원 | 210,000원 | 350,000원 | 140,000원 | 110,000원 |

차량운반비용담보 특약

50만원 한도 차량운반비용 실비 보상

| | |
|-----------|---|
| * 사고시 | -하이카서비스특약 중 견인서비스 이용 시 : 10km 또는 60km 초과구간 담보 -견인서비스 이용 안 한 경우 : 차량운반비용으로 담보 |
| * 수리 종료 후 | -고객의 요청으로 구난형특수차동차 운송사업자가 피보험자의 주소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담보 |

신차손해 담보 특약

가입대상 : 최초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신차**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아래 보험금 지급

| | |
|-----------------|---|
| ① 신차가액 보험금 | 전손이거나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신차가액) 지급 |
| ②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 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 쥐·등록세 지급 신규차량등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20만원 지급 |
| ③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전손 시 대체차량 등록비용 담보 특약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인 경우(신차손해 담보 특약과 중복 가입 불가)
 :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로 실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쥐·등록세 지원
 신규차량등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20만원 지급

렌터카 운전담보 특약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중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 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보상(자기부담금 30만원)
 단, 렌터카 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초과 손해만 보상 ▶ 최대 30일 한도 배서로 가입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

법률비용 지원 특약

1 형사합의지원금

- ❶ 사망 사고
- ❷ 중과실 사고(교통법 제3조 제2항의 사고. 단, 음주/무면허/도주 사고 제외)
- ❸ 위 '❷'이외 중상해사고로 공소제기된 경우
→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
 - 사망/중상해 사고 :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 중과실 사고 :

| 상해구분 | 1급 | 2~3급 | 4~5급 | 6~7급 | 8~14급 |
|------|---------|---------|-------|-------|-------|
| 기본형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
| 고급형 | 3,000만원 | 2,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 |
| 최고급형 | 3,000만원 | 3,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2 변호사 선임비용

피보험자가 구속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 1사고마다 5백만원 한도로 지급

3 벌금비용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2천만원 한도로 지급

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로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비용은 제외하고 가입 가능

참고 장기 운전자 보험과의 비교

| 구 분 | 장기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 특약 |
|------------------|------------------------------|--|
| 보상대상 사고 | 피보험자 운전 중 사고 (본인 차량여부 불문) | 특약을 가입한 차량 사고 (운전가능 범위내 운전자는 모두 보상) |
| 보험기간 | 3년이상 | 1년 |
| 보험료 납입기간 및 주기 | 매월 | 1회 |

※ 실손보상으로 보험금 지급시 중복가입여부 확인

A, B 차량 2대 소유,
A차량만 법률비용 지원 특약 가입한 경우

B차량 운전 중 사고시 법률비용 지원 특약 보험금 지급 불가
피보험자가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경우 각 차량별로 특약을 가입하여야 보상 가능
특약을 가입한 차량의 경우 운전가능범위에 있는 운전자는 모두 보상 가능



4 자동차보험의 구성 - 특별약관

Hicar

『하이카서비스 특약』

6회 제공(3개월 이하 단기계약 1회, 1년 미만 단기계약 3회 제공)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내용 |
|---|--|
|  | 배터리 방전시 시동 배터리 방전(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비대상)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동조치 |
|  | 타이어 평크 수리 및 교체 타이어 평크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평크1개 부위 수리 |
|  | 잠금장치 해제 차 안에 자동차 key를 두고 문이 잠긴 경우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공 ※ 외산차 서비스 미제공 |
|  | 비상급유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 한도로 급유 ※보험기간 중 2회 제공, LPG차량은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서비스 대체 제공 |
|  | 긴급견인 사고 또는 고장으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10km 견인 ※긴급견인 확장 추가 특약가입 → 60km까지 견인 가능 |
|  | 긴급구난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 등으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 |
|  | 휴즈교환 자동차의 휴즈 단락으로 주행이 불가능 할 경우 새 휴즈로 교환 ※엔진룸 릴레이박스 휴즈 교환시 추가비용 발생 |
|  | ROAD 차량진단 차량 이상 유무 확인 서비스 제공(추가특약 가입시) ※외산차 및 OBD-1 시스템 장착 차량은 서비스 제공 불가 |
|  | 배터리 긴급충전지원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써 방전으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기판의 주행가능거리가 10km이내인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충전 기가 설치된 장소(100km한도)로 견인 서비스 제공 |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 ① **배터리 방전시 시동** : 새 배터리로 교체시
- ② **타이어 평크수리 및 교체** : 타이어 평크 1개 초과 수리시
- ③ **비상급유** : 기본 비상급유(휘발유, 경유) 3리터 초과시
- ④ **긴급견인** : 10km 초과시 1km당 2,200원
- ⑤ **긴급구난** :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시작 후 연결 전까지 소요시간이 30분 초과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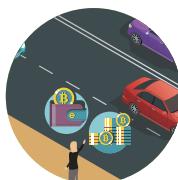
1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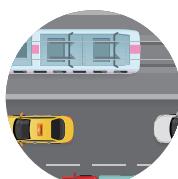
2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단, 대인배상 I 은 보상)



3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유상운송)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운송하는 행위 등



4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중인 재물 및 운송중인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물 포함)



5 시험용 또는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시
(단, 대인배상,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부담금을 납부하고 보상 가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시 보상여부 및 자기부담금



| 구분 | 음주운전 | | 무면허운전 | | 사고후 조치의무 위반 | | 마약·약물운전 | |
|-------------------|-------------------------|-------------------------|-----------------------|-------------------------|-----------------------|-------------------------|-----------------------|-------------------------|
| | 보상 여부 | 자기부담금 | 보상 여부 | 자기부담금 | 보상 여부 | 자기부담금 | 보상 여부 | 자기부담금 |
| 대인배상 I (1인당) | 보상 | 전액구상 (1억5천만원 한도내) | 보상 | 전액구상 (1억5천만원 한도내) | 보상 | 전액구상 (1억5천만원 한도내) | 보상 | 전액구상 (1억5천만원 한도내) |
| 대인배상 II (1사고당) | 보상 | 1억원 | 보상 | 1억원 | 보상 | 1억원 | 보상 | 1억원 |
| 대 물 배 상 | 2천만원 이하 손해 (1사고당) | 보상 | 전액구상 (2천만원 한도내) | 보상 | 전액구상 (2천만원 한도내) | 보상 | 전액구상 (2천만원 한도내) | 보상 |
| | 2천만원 초과 손해 (1사고당) | 보상 | 5,000만원 | 보상 | 5,000만원 | 보상 | 5,000만원 | 5,000만원 |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보상 | - | 보상 | - | 보상 | - | 보상 | - |
| 무보험차상해 | 보상 | - | 보상 | - | 보상 | - | 보상 | - |
| 자기차량손해 | 미보상 | | 미보상 | | 보상 | - | 미보상 | - |

Q

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나 당사 콜센터(1899-6782)로 연락주시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가 발생됩니다. (신규 운전자는 해당일 24시(익일 00시)부터 운전 가능합니다.)

Q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기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추가로 차량 전손시 적용되는 차량기액(보험기액)은 사고시점의 차량기준기액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Q

남편 명의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보험가입경력인정 제도로 배우자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별 보험가입경력 인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약 종류 | 가입경력 인정자 |
|-------------|------------|
| 누구나, 가족한정 | 가족 중 2인 |
| 부부 | 배우자 |
| 기명1인 + 지정1인 | 지정1인 |
| 부부 + 지정1인 | 배우자 및 지정1인 |
| 기명1인 + 자녀 | 자녀 |
| 부부 + 자녀 | 배우자 및 자녀 |

※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외 추가 인정 가능한 가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경력
- 2) 관공서 또는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 3) 군인(또는 경찰) 운전병 경력

Q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A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 사유**

- 1)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 3) 천자재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4)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Q

동일증권이란 무엇인가요?

& A 피보험자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증권(계약)을 원계약으로 하고, 이 원계약에 다른 계약을 추가하여 동일한 증권번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단기계약 가입시 단기요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A 계약기간이 1년미만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1년의 적용보험료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의한 단기요율이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보험기간 | 7일까지 | 15일까지 | 1월까지 | 45일까지 | 2월까지 | 75일까지 | 3월까지 | 105일까지 | 4월까지 |
| 단기요율 | 6% | 10% | 15% | 18% | 20% | 25% | 30% | 35% | 40% |

| | | | | | | | | | |
|------|--------|------|------|------|------|------|-------|-------|-------|
| 보험기간 | 135일까지 | 5월까지 | 6월까지 | 7월까지 | 8월까지 | 9월까지 | 10월까지 | 11월까지 | 12월까지 |
| 단기요율 | 45% | 50% | 60% | 70% | 80% | 85% | 90% | 95% | 100% |

Q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포함되나요?

& A 차량 손해액 산정 시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1점 할증

고객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보험금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0.5점 할증

고객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 지급보험금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단,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이면서 자기차량 손해액 1억원 초과의 경우 건당 2점 할증 (20.7.1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Q

사고처리 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A 사고처리 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의 환급 보험료는 없습니다.

보험료 환급관련 약관규정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참조)

해지의 유형

환급방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을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7 자동차보험 약관 쉽게 찾는 법

Hicar

01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1. 보험계약의 성립 (제4편 제1장 제38조)
2.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4편 제1장 제39조)
3. 청약철회 (제4편 제1장 제41조)
4. 보험기간 (제4편 제1장 제42조)
5.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편 제2장 제44조~제46조)
6. 보험계약의 취소 (제4편 제3장 제50조)
7.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제4편 제3장 제51조)
8. 보험계약 해지·해제·환급 (제4편 제3장 제52조~제54조)

02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제2편 제1장 제1절, 제2절)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편 제1장 제5조, 제8조)
3.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3편 제1장, 제2장)
4. 사고발생시 의무 (제4편 제2장 제46조)

03

자동차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1.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제2편 제2장 제1절, 특별약관 22번)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2편 제2장 제2절)
3. 자기차량손해 (제2편 제2장 제3절)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 제19조, 제23조)
5.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3편 제1장, 제2장)
6. 사고발생시 의무 (제4편 제2장 제46조)

Hicar 다이렉트(CM)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가/입/대/상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Contents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Hicar 다이렉트(CM)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구성

| | |
|---|----|
| 제1조 (용어의 정의) | 38 |
| 제2조 (Hicar 다이렉트(CM)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구성) | 41 |

제2편 Hicar 다이렉트(CM)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 | |
|------------------------|----|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 42 |
| 제4조 (피보험자) | 42 |
|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42 |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 | |
|------------------------|----|
| 제6조 (보상하는 손해) | 43 |
| 제7조 (피보험자) | 43 |
|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43 |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 |
|---|----|
|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 44 |
|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45 |
| 제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45 |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 | |
|--------------------------|----|
|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 46 |
| 제13조 (피보험자) | 46 |
|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46 |
|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47 |
|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47 |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
|-------------------------|----|
|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 48 |
| 제18조 (피보험자) | 48 |
| 제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48 |
| 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49 |

제3절 「자기차량손해」

| | |
|-------------------------|----|
|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 49 |
| 제22조 (피보험자) | 49 |
|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49 |
|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50 |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 |
|-------------------------------|----|
| 제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52 |
| 제26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52 |
| 제27조 (제출 서류) | 53 |
| 제28조 (가지급금의 지급) | 54 |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 |
|--------------------------------|----|
| 제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54 |
|--------------------------------|----|

| | |
|---|----|
| 제30조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54 |
| 제31조 (제출 서류) | 55 |
|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 55 |
|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
| 제33조 (보험금의 분담) | 56 |
|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 56 |
| 제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56 |
|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 57 |
| 제37조 (공탁금의 대출) | 57 |
| 제4편 일반사항 | |
|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
| 제38조 (보험계약의 성립) | 57 |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58 |
|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58 |
| 제41조(청약의 철회) | 59 |
| 제42조(보험기간) | 59 |
| 제43조(사고발생지역) | 60 |
|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
|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60 |
|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60 |
|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60 |
|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
|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61 |
|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61 |
|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62 |
|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 62 |
|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62 |
|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62 |
|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63 |
|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63 |
|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 64 |
| 제4장 그 밖의 사항 | |
| 제55조 (약관의 해석) | 65 |
| 제56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65 |
| 제57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 65 |
| 제5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 65 |
| 제5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 65 |
| 제60조 (분쟁의 조정) | 66 |
| 제61조 (관할법원) | 66 |
| 제62조 (준용규정) | 66 |



Contents

별 표

| | |
|---|----|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 67 |
| <별표 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 74 |
| <별표 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 76 |
| <별표 4> 과실상계 등 | 77 |
|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78 |
| <붙 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 79 |
| <붙 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 87 |

특별약관

I. 운전가능자 제한

| | |
|---|----|
| 1. 운전자 연령 제한 ① 운전자 연령만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91 |
| 2. 운전자 범위 제한 ②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92 |
| ③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2 |
| ④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3 |
| ⑤ 부부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3 |
| ⑥ 기명피보험자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4 |
| ⑦ 지정1인 운전자 추가 특별약관 | 95 |
| ⑧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95 |
| 3. 운전자 범위 확대 ⑨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 96 |
| ⑩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 96 |

II. 보험료 할인

| | |
|---|-----|
| ⑪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 97 |
| ⑫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 99 |
| ⑬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별약관 | 102 |
| ⑭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 103 |
| ⑮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 104 |
| ⑯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 | 105 |
| ⑰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 | 106 |
| ⑱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할인 특별약관 | 107 |
| ⑲ Hicar Green 서비스(전자약관 등) 특별약관 | 108 |
| ⑳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 109 |
| ㉑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 110 |

III. 보장 확대

| | |
|--|-----|
| 1. 본인 및 가족 상해 담보 ㉒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111 |
| ㉓ 상해간병비·사망담보 특별약관 | 112 |

| | | |
|----------------------------|-------------------------|-----|
| 24 | 상급병실·성형·치아보철 지원 특약 | 113 |
| 25 | 자녀 사고 피해 지원 특별약관 | 114 |
| 26 |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등 피해 지원 특약 | 117 |
| 2. 차량 손해 | | |
| 27 |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 118 |
| 28 |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 119 |
| 29 | 차량운반비용담보 특별약관 | 121 |
| 30 |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 | 121 |
| 31 | 전손 시 대체차량 등록비용담보 특별약관 | 122 |
| 32 | 렌터카 운전담보 특별약관 | 123 |
| 3. 법률비용 / 다른 자동차 운전 | | |
| 33 |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 124 |
| 34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27 |
| 35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 129 |
| 4. 전기자동차 | | |
| 36 |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 130 |
| 37 |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 130 |
| 38 |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 131 |
| IV. 기타 | | |
| 1. 긴급출동 서비스 | | |
| 39 |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 131 |
| 40 |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친환경자동차) | 134 |
| 2. 보험료 납입 | | |
| 41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136 |
| 42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37 |
| 43 |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138 |
| 3. 기타 | | |
| 44 | 의무보험 일시당보 특별약관 | 138 |
| 45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39 |
| 46 |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139 |
| 47 |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140 |
| 48 | Eco Point 리워드 특별약관 | 140 |
| 49 |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142 |
| 50 |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143 |
| 51 | Eco 마일리지 환급금 대체사용 특별약관 | 144 |
| 52 | 대출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 144 |
| 기타 | | |
| 법규 해설집 | | 146 |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2. 단기요율 ¹⁾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²⁾ 을 말합니다. |
|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 법규해설 151쪽)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³⁾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 5. 무보험자동차 ⁴⁾ | <p>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p> <p>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⁵⁾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p> |
|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p>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¹⁾ 또는 장비⁽²⁾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³⁾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p> |

1. 단기요율

예)보험기간 1년 보험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1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을 1개월로 하여 단기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15만원 (100 × 15%)입니다.(단기요율 15%는 보험기간 16일부터 1개월까지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단기요율은 보험기간별로 상이합니다.)

2. 보험요율(率別) 보험료 계산 시 가입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 등을 말합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4. 무보험자동차(예)

- 가. 의무보험(대인배상Ⅱ)만 기입한 자동차
- 나.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등 위배시
- 다. 보험금이 대인배상Ⅱ 기입금액을 초과시
라.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5. 공제계약

각 단체별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화물공제조합 등이 있습니다.

예) 버스운수사업자가 버스공제조합과 체결한 계약

| | |
|--------------------------|--|
|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p>(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p> <p>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p> <p>용어풀이</p> <p>(*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p> <p>(*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p> <p>(*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 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하이패스 단말기)</p> |
| 7. 운전(조종) ^(*) | <p>「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 법규해설 151쪽)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p> |
| 8. 운행 ^(*) | <p>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2호) 법규해설 157쪽)</p> |
| 9. 음주운전(조종) | <p>「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p> |
| 10. 의무보험 | <p>「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 법규해설 158쪽)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p> |
| 11. 자동차보유자 | <p>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3호) 법규해설 157쪽)</p> |
| 12. 자동차 취급업자 | <p>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p> |
| 13. 피보험자 | <p>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p> |

6.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법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장 제29 조를 말하며, 「금지되어 있는 물건」이란 자동차운행에 있어 본인 및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은 튜닝품, 경광등, 사이렌, 번호판 가림장치 등을 말합니다.

7. 운전과 운행 구분

예) 김현대씨는 서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 도착 후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전」이란 김현대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운행이란 운전 종료 후 주차가 된 상황 및 이후 관리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운행」이 「운전」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8.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에 사람이 탑승하거나 혹은 물건을 싣고 가지 않더라도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약관에서 「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9. 피용자(被傭者)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0.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親族)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기명피보험자와 동일가족에 살거나 부양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 |
|---------------------------------------|---|
| 13. 피보험자 | <p>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p> <p>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¹¹⁾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p> <p>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¹²⁾를 포함)를 말합니다.</p> |
|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p>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p> <p>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¹³⁾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p> <p>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p> |
| 16. 휴대품, 인명 보호장구 및 소지품 ¹⁴⁾ | <p>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p> <p>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 의류^(*)를 말합니다.</p> <p>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p> <p>용어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바이크 전용 수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18. 보험가액 ¹⁵⁾ | <p>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p> <p>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p> |
| 19. 마약·약물운전 |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1. 사용자 근로자(피용자)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는 자로서 사업주, 경영담당자 등을 말합니다.
12. 운전보조자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 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통상 조수나 차장 등이 이에 속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선의의 보조행위(예 : 길 가던 행인의 선의의 보조행위 등)는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13. 사설흔 결흔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사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 동거와는 구별됩니다.(중흔적 사설흔 제외)
14. 휴대품과 소지품의 차이
휴대품은 사고당시 휴대여부가 불명확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으나, 소지품은 파손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지품의 경우로도 노란, 분실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 사고발생시 지갑속에 있던 현금은 보상받을 수 없지만, 파손된 휴대폰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5. 보험가액 (예) 2019년 1월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당시 차량의 보험가입금액은 1천만원이었으나, 2019.10.1일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이 900만원인 경우 그 900만원을 의미합니다.

제2조 (Hicar 다이렉트(CM)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구성)

-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Hicar 다이렉트(CM) 개인용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법규해설 158쪽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Hicar 다이렉트(CM)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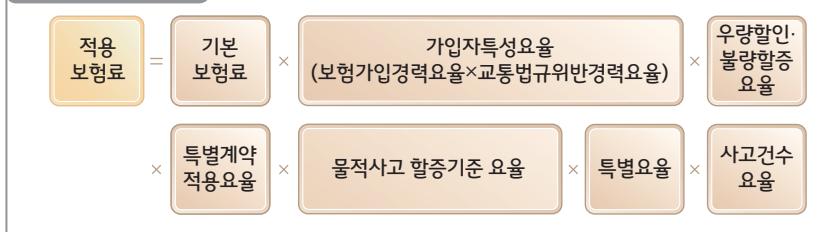
|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적용보험료 계산>^[6]



16. 적용보험료 계산

예시) 기입조건 : 보험가입경력 3년 이상, 법규위반경력 無, 할인할증 등급 15등급(15Z),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만원 기입, 최근 3년간 무사고자 기준

<적용보험료 계산>

| | | | | | | | | | | | | | | |
|--------------------|---|----------------------|---|---|---|------------------------|---|---------------------------|---|------------------------------|---|----------------|---|---------------------------|
| 적용보험료 (50만420원) | = | 기본보험료(예시) (100만원) | ×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율 100% X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95.3%) | × | 우량할인·불량할증 요율(59.2%) | × | 특별계약적용요율 (15등급, 59.2%) | × | 물적사고 할증기준 요율 (100%) | × | 특별요율 (100%) | × | 사고건수요율 (3년 무사고, 88.7%) |
|--------------------|---|----------------------|---|---|---|------------------------|---|---------------------------|---|------------------------------|---|----------------|---|---------------------------|

| 구 분 | 내 용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특약요율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특별계약 적용요율 |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 보험료를 회피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 |
| 물적사고 할증기준 요율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100·150·200만원 중 계약자가 선택한 가입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 |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제2편

Hicar 다이렉트(CM)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법규해설 158쪽)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대인배상 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¹⁷⁾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¹⁸⁾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법규제설 158쪽)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¹⁹⁾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제6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 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²⁰⁾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²¹⁾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7. 고의(故意)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피보험자 고의로 손해발생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예) ① 피보험자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 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자기부담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 ③ 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 ④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청구(3년 이내)
- 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19.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업무상 위탁 예) 피보험자가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정비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맡겨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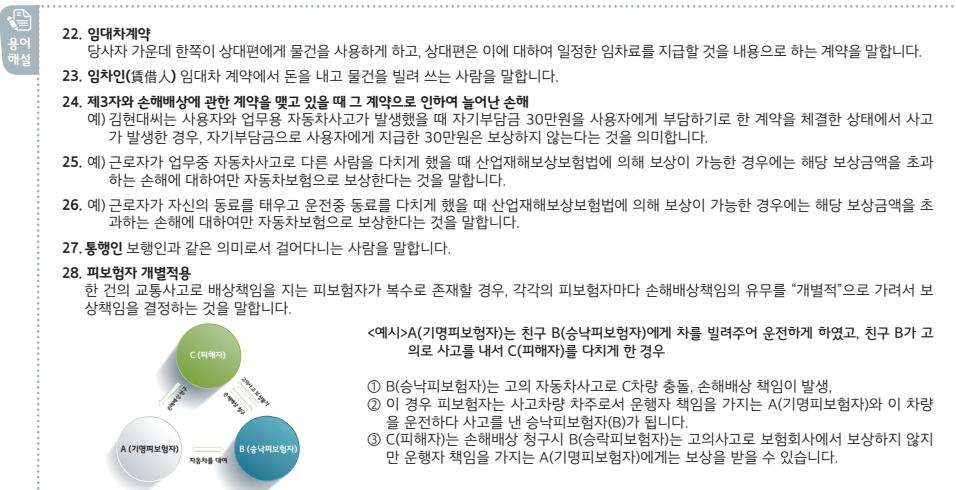
21. 사변(事變) 전쟁에까지 이르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폭동(暴動)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요(騷擾) 폭동과 유사한 행위이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써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²²⁾**(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²³⁾**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규해설 154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 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²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 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규해설 153쪽**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²⁵⁾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규해설 153쪽**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²⁶⁾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²⁷⁾**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²⁸⁾)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자동차순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text{지급 보험금} = \boxed{\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용어풀이

(*)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29. 제10조 3항에서 정하는 비용

손해의 감소를 위해 타당하게 사용된 금액으로써 지급보험금 산출식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해 드립니다.

예)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사고발생 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지출한 금액(긴급조치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사고의 과실여부를 증명해줄 블랙박스, CCTV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 쌍방과실 사고시 제3자에 대한 구상 채권확보를 위해 신속한 채권보전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30. 명시적·묵시적 승인

법률상 주상적인 개념으로서 사안 별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내용입니다.

(1) 명시적 승인이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묵시적 승인이란 직접적인 말 또는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법규해설 158쪽)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법규해설 158쪽)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응주운전, 무면허운전, 미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
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
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
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 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대인배상 II」의 피보험자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³¹⁾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³²⁾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31.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한 피보험자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승한 배우자 등 다른 피보험자는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32. **사변(事變)**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폭동(暴動)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요(騷擾) 폭동과 유사한 행위이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써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54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³³⁾

$$\text{지급보험금} = \text{실제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5」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별표 4>의 1. 과실상계³⁴⁾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정부보장사업³⁵⁾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무보험자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규해설 153쪽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상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3.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자동차의 단독 서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4. 과실상계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35.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배상의무자'란 향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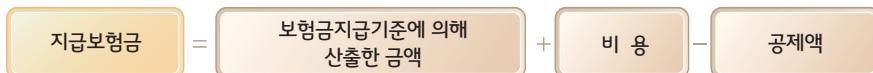
제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흉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54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 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순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불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불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¹⁾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차⁽²⁾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³⁾
- ③ 보험회사는 위 ②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타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 번호를 말함)와 사고당시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 (*) '경미한 손상'⁽³⁷⁾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 '타차' 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 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제22조 (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36.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차체 등 차량 전체가 도난된 경우에 보상하고, 타이어 등 일부 부속품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7. (예) 범퍼 등 외장부품의 코팅·색상·소재 손상으로 도색, 판금 등으로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54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³⁸⁾,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³⁹⁾,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 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⁴⁰⁾의 경우는 제외)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악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용어풀이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지급보험금} = \frac{\text{피보험자동차에}}{\text{생긴 손해액}} + \frac{\text{비 용}}{-} \frac{\text{보험증권에 기재된}}{\text{자기부담금}}^{41)}$$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8. 압류(留押)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발(徵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건물, 토지, 물자를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 보상을 지급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수(沒收)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을 말합니다.

39. 마멸(磨滅)
갈려서 닳아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40. 오손(汚損)
더럽히고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41. 자기부담금 제도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등의 일부 손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⁴²⁾**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⁴³⁾**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용어풀이

(*)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②항 법규해설 157쪽)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법규해설 157쪽)에 따라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인 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⁴⁴⁾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42. 잔존물(殘存物)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수리하여 교환된 부분품 등에 자산적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전선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보험금 계산시 파손된 피보험자동차를 매매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43. 감가상각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의 부분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만큼 하락된 가치감소분을 말합니다.

44. 전부손해 발생시 자기부담금 미공제

(예) 차량가액 500만원으로 보험가입되어 있으나, 사고로 수리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용어풀이

(*)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종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때 |
| 2.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 4.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26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⁴⁵⁾**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⁴⁶⁾**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⁴⁷⁾**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율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주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45. 7일 이내

지급보험금이 최종 확정된 날(0시 기준)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주말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 단, 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평일로 합니다. 예) 보험금확정일('19. 9. 1일 0시)부터 7일째 되는날('19. 9. 7일 24시)까지

46. 연 단위 복리

이자 계산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계산 방법입니다.

예) 원금 : 100원 / 이자율 : 연 10%

$$- 1년 후 : 100원 + (100원 \times 10\%) = 110원 \quad - 2년 후 : 110원 + (110원 \times 10\%) = 121원$$

47.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예)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⁴⁸⁾.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⁴⁹⁾.
-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⁵⁰⁾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 |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 ○ |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 | ○ | |
|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 | ○ | |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 |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48. 제26조 4항

자동차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직접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10만원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10만원을 초과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9. 제26조 5항

피보험자와 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자)가 동시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50.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장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비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제28조 (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⁵¹⁾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⁵²⁾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⁵³⁾

제30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⁵⁴⁾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1. 갈음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서면을 대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52.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약관의 각 보험증명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일방과실인 경우(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 등)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53.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가진 권리(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와 동일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54.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예)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에 의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임의로 증거를 제출을 거부하거나, 보험회사 등이 없이 배상책임액이나 보험회사 대위권 포기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합의하는 등을 말합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⁵⁵⁾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 (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 I · II | 대물배상 |
|--|-------------|------|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⁵⁶⁾ 등



55. 정기금

손해배상액(손해배상금) 등을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56. 분담

나누어서 말음을 의미합니다.

제33조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⁵⁷⁾: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손해액 ×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 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⁵⁸⁾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 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⁵⁹⁾)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⁶⁰⁾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⁶¹⁾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 |
|--|---|
| <p>57. 중복보험 시 보험금의 분담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동차 손해액 : 100만원• 계약 A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계약 B : 보험가입금액 50만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A : 100만원, B : 50만원- 사고로 계약 A, B가 부담할 전체 손해액 : 100만원- 계약 A, B의 부담금액 A : 100만원 X 100만원/(100만원+50만원) = 666,667원 B : 100만원 X 50만원/(100만원+50만원) = 333,333원 | <p>58. 배상책임에 따른 분담 예시</p> <p>A차량(과실비율 : 20%)과 B차량(과실비율 : 80%)의 과실로 C차량에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p> <p>A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20% = 20만원</p> <p>B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80% = 80만원</p> <p>59. 대위(代位)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p> <p>60.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p> <p>예) 1차사고(B차량 -> C차량) 및 2차사고(A차량 -> B차량 -> C차량)로 3중주행사고 발생시</p> <p>A차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B차량과 C차량의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한 경우 B차량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p> <p>를 취득합니다.</p> <p>6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p> <p>제3자의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p> |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근공⁶²⁾ 경솔 또는 무경험⁶³⁾**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 (공탁⁶⁴⁾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입금**⁶⁵⁾나 가입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⁶⁶⁾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자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⁶⁷⁾

62. 곤궁(困窮)

기난하여 살림이 구차하거나 처지가 난처하고 딱한 상태를 말합니다.

63. 경솔 또는 무경험

손해배상에 대한 경험에 없어 신중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64. 공탁(供託)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돈을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65. 가입금

채무자의 재산을 제권액의 한도내에서 일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환기(매매,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차분을 말합니다.

66. 회수청구권

보험회사가 대출한 공탁금은 피보험자 명의로 공탁소(법원 등)에 맡겨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대출해준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67. 제38조 4항

피보험자가 2019년 1월 1일 24:00시부터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을 청약하고 보험회사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보험회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예. 사고 후 보험계약 체결 등)가 없는 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제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⁶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⁶⁹⁾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자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 (보험안내자료의 효력⁷⁰⁾)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68. 부분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69. 약관의 중요한 내용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지급 및 지급 제한 사항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

70. 안내자료의 효력

예) 동일한 보상내용에 대해 보험약관에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보험 안내자료에 보상하는 내용으로 안내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제41조 (청약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⁷¹⁾
-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용어풀이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후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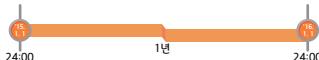
| 구 분 | 보험기간 |
|-------|--|
| 1.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⁷²⁾ .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71. 제41조 1항

다만, 청약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72. 보험기간

예) 21.1.1일 1년만기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개시일 : '21.1.1일 / 보험만료일 '22.1.1일 : 보험개시일 24시부터 개시



(예외)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김현대씨

1. '21.1.1일 15시에 보험료 납입한 경우(보험개시일 납입)
: 보험료 납입시점(15시)부터 보험개시

2. '20.12.31일 15시에 보험료 납입한 경우(보험개시일 이전 납입)
: 보험개시일 00시부터 개시



| 구 분 | 보험기간 |
|---|---|
|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 터 시작합니다. |

용어풀이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 (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심게 된 사실
 -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⁷³⁾)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73. 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대채무자'란 위 공동불법행위를 통해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는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보험회사는 제 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⁷⁴⁾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⁷⁵⁾)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⁷⁶⁾에게 **승계**⁷⁷⁾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보험회사가 제 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 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

73. 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상호간의 구상권'이란 만약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100% 이행한 경우에, 대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A차량(과실 20%)과 B차량(과실 80%)의 사고로 C차량에 피해를 주었다면 B차량 소유자가 C차량에 대해 100% 손해배상을 한 후 과실 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A차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 A차량과 B차량의 자동차사고로 C차량에 피해

연대채무자 : A차량 및 B차량 운전자

상호간의 구상권 : B차량 운전자가 100% 선 손해배상 후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금 청구

74.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75.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동차 양도를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10일이내 승인여부를 피보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양도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11일째 되는날에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10일 이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에 관하여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이 피보험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76. 양수인 타인의 권리, 재산 등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양도인"은 권리, 재산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77. 승계(承繼)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 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⁷⁸⁾

$$\text{기납입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 : 366)}$$

제50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⁷⁹⁾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⁷⁹⁾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⁸⁰⁾)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 법규해설 150쪽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

78. 예) 일할보험료 계산방식

보험기간 : '19. 1. 1~'20. 1. 1

피보험자동차 대체일 : '19. 12. 1

기납입보험료 : 30만원 <계산> 30만원 × 31/365 = 25,480원

79. 사기에 의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보험회사가 취소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참조)

80. 해지와 해제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해당시점부터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과거로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 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³¹⁾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³²⁾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2(법규해설 158쪽)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법규해설 157쪽)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규해설 157쪽)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적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³³⁾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81.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1항 3호
대체 전후의 차량을 동일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이 교체된 자동차로 승계되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82.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1항 5호

1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을 보험기간이 중복되도록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계약 이외의 다른 의무보험 중복계약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83. 중대한 과실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주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 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⁸⁴⁾**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84.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친권자, 후견인)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 (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법규해설 146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법 규해설 154쪽)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법규해설 154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 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 (분쟁의 조정)

-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순해배상청 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범규해설 151쪽)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1조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 (준용규정⁸⁵⁾)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85. 준용규정

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상법, 민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는 사고발생일 기준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 항 목 | 지급 기준 |
|----------|--|
| 1. 장례비 | 지급액: 5,000,000원 |
| 2. 위자료 | <p>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p> <p>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p> |
| 3. 상실수익액 | <p>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⁸⁶⁾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⁸⁷⁾</p> <p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p>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 용어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

86. 호프만계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계산시 장래에 대한 수입감소분을 현재에 미리 받음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호프만 계수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87.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예) '19.4.1일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현장사망, 피해자 연령 만55세('63.8.15일생),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취업가능월수(112개월, 2028.8.15 ~ 2019.4.1 = 9년 4개월 14일(월 미만 일자는 버림)), 호프만 계수 91.7592
⇒ 300만원X(1-1/3)X91.7592=183,518,400



| 항 목 | 지급 기준 |
|----------|---|
| 3. 상실수입액 | <p>나) 사업소득자</p> <p>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88)} - (연간수입액 \times 기준경비율^{89}) - 제세공과금 \\ \times 노무기여율^{90} \times 투자비율]$ </div> <p>(주) 1.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⁹¹⁾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당사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풀이</p> <p>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p style="text-align: center;">*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p> </div> <p>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풀이</p> <p>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p> |

| |
|--|
| <p> 용어 해설</p> <p>88. 주요경비 매입나언용(제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p> <p>89. 기준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입니다.</p> <p>90. 노무기여율 사업소득에 산정에 있어 본인의 노무(勞務)가 기여한 비율입니다.</p> <p>91. 단순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입니다.</p> |
|--|

| 항 목 | 지급 기준 | | | | | | | | |
|--------------|---|---------|---------|--------------|-----|--------------|-----|--------|-----|
| 3. 상실수익액 | <p>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다)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라)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 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p> <p>(2) 가시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p> <p>(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p> <p>(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생활비율: 1/3</p> <p>라. 취업가능월수</p> <p>(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p> <p>(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거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피해자의 나이</th> <th>취업가능 월수</th> </tr> </thead> <tbody> <tr> <td>62세부터 67세 미만</td> <td>36월</td> </tr> <tr> <td>67세부터 76세 미만</td> <td>24월</td> </tr> <tr> <td>76세 이상</td> <td>12월</td> </tr> </tbody> </table> <p>(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 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p> <p>(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 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 36월 | 67세부터 76세 미만 | 24월 | 76세 이상 | 12월 |
|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 월수 | | | | | | | | |
| 62세부터 67세 미만 | 36월 | | | | | | | | |
| 67세부터 76세 미만 | 24월 | | | | | | | | |
| 76세 이상 | 12월 | | | | | | | | |
| | | | | | | | | | |

| 항 목 | 지급 기준 |
|----------|--|
| 3. 상실수익액 | <p>용어풀이</p> <p>(*)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p> <p>(*)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p> <p>마. 호프만 계수⁹²⁾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고려하고 계산하는 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p style="text-align: center;">$i=5/12\%$, $n=\text{취업가능월수}$</p>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금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항 목 | 지급 기준 |
|--|--|
| 1. 적극손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 <p>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 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회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



92. 호프만 계수의 계산(일미안 일자의 처리)

월미안 일자는 모두 합산하여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호프만 계수 산출 시 1개월을 가산합니다.
(30일 이하는 미반영)

<예시>

- ① 사망일 2019. 1. 1
- ② 생년월일: 1988. 5. 20
- ③ 보험금지급일 2019. 7. 20
- ④ 취업가능연한: 2053. 5. 19(생년월일 + 65세)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③-①) : 2019. 7. 20 - 2019. 1. 1 = 6개월 19일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④-③) : 2053. 5. 19 - 2019. 7. 20 = 405개월 29일
⇒ 6개월 + (405개월 + 19일 + 29일)의 호프만 계수 = '6개월' + '406개월의 호프만 계수' = '6개월' + 237.324 = 243.324

| 항 목 | 지급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적극손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 <p>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p>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상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료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위자료 |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만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 </thead> <tbody> <tr> <td>1</td><td>200</td><td>5</td><td>75</td><td>9</td><td>25</td><td>13</td><td>15</td></tr> <tr> <td>2</td><td>176</td><td>6</td><td>50</td><td>10</td><td>20</td><td>14</td><td>15</td></tr> <tr> <td>3</td><td>152</td><td>7</td><td>40</td><td>11</td><td>20</td><td></td><td></td></tr> <tr> <td>4</td><td>128</td><td>8</td><td>30</td><td>12</td><td>15</td><td></td><td></td></tr> </tbody> </table> <p>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p>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 4 | 128 | 8 | 30 | 12 | 15 | | |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152 | 7 | 40 | 11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128 | 8 | 30 | 12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휴업손해 | <p>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p> <p>용어풀이</p> <p>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p> <p>산식</p> $1\text{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5}{100}$ <p>나. 휴업일수의 산정</p> <p>(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p> <p>(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 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함.</p> <p>(3) 취업 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 목 | 지급 기준 | | | | | | | | |
|---------------|--|------|------|-------|-----|-------|-----|----|-----|
| 3. 휴업손해 | <p>다. 수입감소액의 산정</p> <p>(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p> <p>(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p> <p>(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p> <p>(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 | | | | | | | |
| 4. 간병비 | <p>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p> <p>나. 인정 대상</p> <p>(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치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p> <p>다. 지급 기준</p> <p>(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해등급</th> <th>인정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급~2급</td> <td>60일</td> </tr> <tr> <td>3급~4급</td> <td>30일</td> </tr> <tr> <td>5급</td> <td>15일</td> </tr> </tbody> </table>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1급~2급 | 60일 | 3급~4급 | 30일 | 5급 | 15일 |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 | | | | | | |
| 1급~2급 | 60일 | | | | | | | | |
| 3급~4급 | 30일 | | | | | | | | |
| 5급 | 15일 | | | | | | | | |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p>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p> <p>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p> <p>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p> | | | | | | | |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항 목 | 지급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1. 위자료 |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 상실률 × 85%</p> <p>(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 상실률 × 85%</p> <p>(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 <p>(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p>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노동능력상실률</th> <th>인정액</th> <th>노동능력상실률</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45% 이상 50% 미만</td> <td>400</td> <td>14% 이상 20% 미만</td> <td>120</td> </tr> <tr> <td>35% 이상 45% 미만</td> <td>240</td> <td>9% 이상 14% 미만</td> <td>100</td> </tr> <tr> <td>27% 이상 35% 미만</td> <td>200</td> <td>5% 이상 9% 미만</td> <td>80</td> </tr> <tr> <td>20% 이상 27%미만</td> <td>160</td> <td>0 초과 5% 미만</td> <td>50</td> </tr> </tbody> </table>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14% 이상 20% 미만 | 120 | 35% 이상 45% 미만 | 240 | 9% 이상 14% 미만 | 100 | 27% 이상 35% 미만 | 200 | 5% 이상 9% 미만 | 80 | 20% 이상 27%미만 | 160 | 0 초과 5% 미만 | 50 |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 | | | | | | | | | | | | | | | | |
| 45% 이상 50% 미만 | 400 | 14% 이상 20% 미만 | 120 | | | | | | | | | | | | | | | | | | |
| 35% 이상 45% 미만 | 240 | 9% 이상 14% 미만 | 100 | | | | | | | | | | | | | | | | | | |
| 27% 이상 35% 미만 | 200 | 5% 이상 9% 미만 | 80 | | | | | | | | | | | | | | | | | | |
| 20% 이상 27%미만 | 160 | 0 초과 5% 미만 | 50 | | | | | | | | | | | | | | | | | | |
| 2. 상실수익액 | <p>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p> <p>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text{월평균현실소득액}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text{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text{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 \times \text{호프만계수})$ </div>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2) 가사증조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3) 무직자(학령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육내 또는 육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p> | | | | | | | | | | | | | | | | | | | | |

93.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

미국 오글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애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맹봉율(%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24%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애율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기준은 장애의 부위종류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순차집이 들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를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항 목 | 지급 기준 |
|----------|---|
| 2. 상실수익액 | <p>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달동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라. 노동능력상실기간 : 사망한 경우 취업 가능월수와 동일</p> <p>마. 호프만 계수 : 사망한 경우와 동일</p> |
| 3. 가정간호비 | <p>가. 인정 대상</p> <p>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 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 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⁹⁴⁾를 요구하는 자</p> <p>(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끌어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 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p>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거나 짐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제화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개호를 필요로 한다.</p> <p>나. 지급 기준</p> <p>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여,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 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

<별표 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 항 목 | 지급 기준 |
|---------|---|
| 1. 수리비용 | <p>가. 지급대상 :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¹⁾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p> <p>(2) 열처리 도장⁹⁵⁾료 :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p> <p>(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²⁾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p> <p style="text-align: center;">용언풀이</p>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p>(*1)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p> <p>(*2)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p> </div> |

94. 개호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걸어서 들보아 줌'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100%)가 남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95. 도장 재료의 표면을 보호 혹은 미화하기 위해서 페인트나 래커 등의 도료를 바르거나 뿐어서 도막(塗膜)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항 목 | 지급 기준 |
|-------------------------|--|
| 2. 교환가액 ⁽⁹⁶⁾ |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p> |
| 3. 대차료 ⁽⁹⁷⁾ | <p>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등급⁽¹¹⁾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¹²⁾.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등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¹³⁾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풀이</p> <p>(*) "등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 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p>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¹⁴⁾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입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배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p> <p>(*)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등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등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p> <p>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¹⁵⁾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p> |
| 4. 휴차료 | <p>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

96. 교환가액

「교환가액」이란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예: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97. 대차료

“대차료”란 차를 대여(貸與)하는 비용 즉, 렌트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약관상 인정기준액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항 목 | 지급 기준 |
|------------------|---|
| 4. 휴 차 료 |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 가능한 경우</p> <p>(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p>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
| 5. 영업손실 | <p>가. 지금대상</p> <p>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p> <p>(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p> <p>(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p>가. 지금대상</p> <p>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p> <p>(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p> <p>(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p> |



<별표 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
|-------|---------|---------|---------|-------|---------|---------|---------|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8급 | 18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 2급 | 8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9급 | 140만원 | 280만원 | 450만원 |
| 3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10급 | 12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 4급 | 7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11급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5급 | 500만원 | 1,000만원 | 1,650만원 | 12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 6급 | 4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13급 | 4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 7급 | 25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4급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장애등급 | 보험가입금액 | | | |
|------|---------|---------|---------|---------|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2) 후유장애구분 및 금별 보험가입금액표

| 장애등급 | 보험가입금액 | | | |
|------|---------|---------|---------|---------|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 항 목 | 지급 기준 |
|--|--|
| 1. 과실상계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출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여,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p>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p> <p>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
| 1. 과실상계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출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여,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여,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p> <p>(*)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p> |

| 항 목 | 지급 기준 |
|---------------|---|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 4. 기왕증 | <p>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p> <p>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 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1)'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p> |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용어풀이

(*)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 수정요소 | 수정비율 |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 10~20%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제2항 관련)

| 기 간 | 지급이자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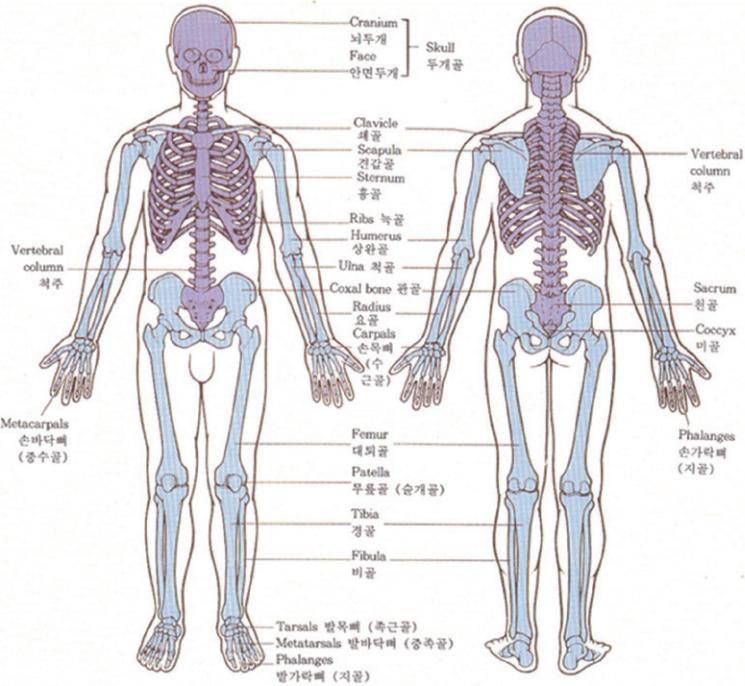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 1급 | 3천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안 앙구 파열로 앙구 적출술 또는 앙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주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집합술을 시행한 상해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상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1,500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주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텔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집합술을 시행한 상해 고관절의 골결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집합술을 시행한 상해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200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단안 앙구 적출술 또는 앙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 3급 | 1,200만원 | <p>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p> <p>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p> <p>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끝두 골절은 제외한다)</p> <p>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싱자인대의 파열</p> <p>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
| 4급 | 1천만원 |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 후안부 내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p> <p>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p> <p>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p> <p>8. 상완골 경부 골절</p> <p>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p> <p>10. 상완골 과장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p> <p>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끝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p> <p>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끝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p> <p>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오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p>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18. 골반환이 인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p> <p>19. 골반골 관절의 이로우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p> <p>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26. 화상, 좌창, 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p> <p>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
| 5급 | 900만원 |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병사선학적 수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p> <p>4. 안정성 추체 골절</p> <p>5. 상완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6. 상완골 간부 골절</p> <p>7. 요골 끝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p> <p>9. 요골 경상돌기 골절</p> |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 5급 | 900만원 | <p>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p> <p>11. 수근 주상골 골절</p> <p>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p> <p>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p> <p>20. 슬개골 골절</p> <p>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상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p> <p>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p> <p>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p> <p>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시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복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1. 사지의 주요 막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2. 23회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
| 6급 | 700만원 |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4. 심장 타박</p> <p>5. 폐좌상(임족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흡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p> <p>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터,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p> <p>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p> <p>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p> <p>14. 주관정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의 골절</p> <p>18. 요골 경부 골절</p> <p>19. 척골 주두부 골절</p> <p>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p> <p>21. 다발성 수근증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p> <p>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p> <p>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 6급 | 700만원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시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상각성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 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자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3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경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능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수지관절 족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인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막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강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 9급 | 240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출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경연골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진건 1개의 파열로 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200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염상 2. 안경과 누소관 염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염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60만원 |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120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염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균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염상으로 정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강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3급 | 80만원 | 1. 결막의 염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4급 | 50만원 | 1. 복방,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 영역별 세부지침

| 영 역 | | 내 용 |
|------|----|--|
| 공통 | | <p>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 한다)</p> <p>일반 의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 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p> <p>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p> <p>재해 발생 시 만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p> <p>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p> |
| 두부 | | <p>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월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 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p> <p>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p> <p>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p> <p>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p> <p>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p> <p>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p> <p>외상후 긍정 스트레스 장에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p> |
| 흉·복부 | | <p>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싱楞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종족 시 인정한다.</p> |
| 척추 | | <p>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척추관 협착증이나 주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p> <p>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p> <p>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p> |
| 상·하지 | 공통 | <p>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편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2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양측 또는 단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p> <p>골절에 주요 밀초신경의 손상 등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

| 영 역 | | 내 용 |
|------|----|--|
| 상·하지 | 공통 | <p>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p> <p>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p> <p>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p> <p>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을 준용한다.</p> <p>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p>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p> <p>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p> <p>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 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
| 상지 | | <p>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견봉 쇠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쇠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쇠골인대 및 오구 쇠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여,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p>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p> |
| 하지 | | <p>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p> <p>슬관절 심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심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축부인대 동시 파열, 심자인대와 축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p> <p>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족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p> <p>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p> <p>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p> <p>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여,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p> <p>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심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p> <p>골반화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
| 1급 | 1억5천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반신불수가 된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2급 | 1억 3,500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 1억 2,000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 1억500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두 발을 족근증족(List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 9천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발의 별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 7,500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척추에 뚜렷한 기능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
| 7급 | 6,000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을 죽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4,500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 3,800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엉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의 엉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 급 | 2,700만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엉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엉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
| 10 급 | 2,700만원 |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엉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11 급 | 2,3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균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네번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엉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12 급 | 1,900만원 | 1. 한쪽 눈의 균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껏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경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네번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엉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 급 | 1,5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 급 | 1,000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엉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
| | |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엉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엉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엉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엉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의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麻痹)가 인정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 운전가능자 제한

-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으로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가족 또는 부부 등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운전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 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운전자 연령 제한

① 운전자 연령 만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⁹⁸⁾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8. (예) 피보험자동차를 수리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맡겨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으로 대인배상 II, 대물배상(2천만원 한도)을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해당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4.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운전자 범위 제한

②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③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⁹⁹⁾」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④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⑤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⑤ 부부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99. 「가족」의 정의에서 양부모, 양자녀, 사실혼, 계부모, 계자녀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 「양부모」: 양자녀 : 일정에 의해 부모 또는 자녀의 자격을 얻은 사람
-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는 상태
- 「계부모」: 계부(아미나)가 재혼하여 생긴 아버지(아미나)와 계모(아버지)가 재혼하여 생긴 어머니(아미나)
- 「계자녀」: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온 자녀

용어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양녀
 2.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3.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⑥ 기명피보험자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양녀
- 2.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 3.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7) 지정1인 운전자 추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이하 「지정운전자」라 하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제외함)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8)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운전자범위 확대

⑨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대리운전 시 대리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자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 받아 운전하게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 택승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의 「택승」이라 함은 차주가 등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여 차량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⑩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II

보험료 할인

⑪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이 특별약관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 (1)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을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계 조작, 주행거리 촬영사진 위변조 등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③이 특별약관 '7. 보험료 정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에 따라 송부한 최초 주행거리 정보에서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2)'에 따라 송부한 최종 주행거리 정보까지의 주행거리를 이 특별약관 '5.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에 따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의 촬영사진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2)위 '(1)'에도 불구하고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이 완료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4)위 '(3)'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 이전 7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및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6)선할인형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해야 하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7)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도록(선할인형의 경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를 추징 또는 환급) 보험계

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선택인형의 경우 신용카드번호 포함)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사의 주행거리 정보 등 확인

-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때, 하이카서비스를 제공할 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거리 계기판 확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러한 확인,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정보 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불가한 경우, 연간 주행거리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1)' 또는 '(5)'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1. 가입대상'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¹⁰⁰⁾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text{연간 주행거리} = \text{일평균 주행거리} \times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7. 보험료 정산

(1) 선택인형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 금액을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

100.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예) 보험기간 : '18.9.1 ~ '19.9.1(1년 정상계약)

최초사진송부 : '18.8.16(최종주행거리 3,500km), 최종사진송부 : '19.8.1(최종주행거리 8,500km)

일평균 주행거리 = (8,500km - 3,500km) / 350일 ('19.8.1-'18.8.16) = 14.3km, 연환산 주행거리 : 14.3km × 365일 = 5,220km

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 내지 '(5)'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 야 할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

나. 이 특별약관 '4. 특약약관 계약의 무효'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처리 되는 경우

③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 산출'에 따라 산출한 피보험자 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를 미만 또는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④ 회사는 위 ②' 내지 ③'이외에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⑤ 위 ③'의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 미만으로 운행하여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시 회사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 또는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최종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된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회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리거나,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후환급형

회사는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 또는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최종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된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회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리거나,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 연간 주행거리 | 적용보험료의 |
|---------------------------|--------|
| 15,000Km 초과 | 0% |
| 12,000km 초과 ~ 15,000km 이하 | |
| 10,000km 초과 ~ 12,000km 이하 | |
| 7,000km 초과 ~ 10,000km 이하 | |
| 5,000km 초과 ~ 7,000km 이하 | |
| 3,000km 초과 ~ 5,000km 이하 | |
| 3,000km 이하 | |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구간별 정산율

주) 보험료 정산시 하이카서비스 특약(또는 하이카서비스 특약 (친환경자동차)) 보험료 제외

⑫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이 특별약관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를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로써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계기판 사진전송 방식)'을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계 조작, 주행거리 촬영사진 위변조 등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이 특별약관 '7. 보험료 정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장치 고장, 무선통신 서비스 해지 등의 사유 발생 시 약체계결일로 소급하여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7. 보험료 정산'의 '(2) 후환금형」으로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 출고 시 차량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
 - ② 상기 ① 이외에 피보험자가 별도로 구매하여 장착한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
- (2)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에 따라 송부한 최초 주행거리 정보에서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에 따라 송부한 최종 주행거리 정보까지의 주행거리를 이 특별약관 '5.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에 따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단,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1)'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5)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위 '(1)'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 (6) 선할인형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해야 하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7)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도록(선할인형의 경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를 추징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선할인형의 경우 신용카드번호 포함)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사의 주행거리정보 등 확인

-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때, 하이카서비스를 제공할 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거리 계기판 확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러한 확인,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2)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및 시간 동안에는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60km(1일 500km한도)를 주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해당 기간 및 시간
 - ②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 ③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 (3) 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정보 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불가한 경우, 연간 주행거리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1)', '(4)' 또는 '(5)'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1. 가입대상'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보험기간 첫날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기준으로 연간 주행거리를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text{연간 주행거리} = \text{일평균 주행거리} \times 365$$

$$1) \text{일평균 주행거리} : (\text{최종 주행거리} - \text{최초 주행거리}) \div \text{경과기간}$$

$$2) \text{경과기간} : \text{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활영한 날짜 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7. 보험료 정산

(1) 선할인형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 금액을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할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
- 나. 이 특별약관 '4. 특약약관 계약의 무효'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처리 되는 경우
- ③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 산출'에 따라 산출한 피보험자 동자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를 미만 또는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④회사는 위 '②' 내지 '③' 이외에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⑤위 '③'의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 미만으로 운행하여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시 회사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리거나,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 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후환급형

회사는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 송금하여 드리거나,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 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 연간 주행거리 | 적용보험료의 |
|---------------------------|--------|
| 15,000Km 초과 | 0% |
| 12,000km 초과 ~ 15,000km 이하 | |
| 10,000km 초과 ~ 12,000km 이하 | |
| 7,000km 초과 ~ 10,000km 이하 | |
| 5,000km 초과 ~ 7,000km 이하 | |
| 3,000km 초과 ~ 5,000km 이하 | |
| 3,000km 이하 | |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구간별 정산을

주) 보험료 정산시 하이카서비스 특약(또는 하이카서비스 특약 (친환경자동차)) 보험료 제외

⑬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 (2)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태아를 임신한 경우

용어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위 '1. 가입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등) 단,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계약 등을 통해 '1. 가입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

- ① 위 '2' 서류를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에 제출한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 ② 위 '2' 서류를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에 제출한 경우
 - 가.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확인일
 - 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을 통해 보험기간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로 소급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
-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 커넥티드카¹⁰¹⁾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정보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함) 또는 제휴 자동차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장착되고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정의> ②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①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 ②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 ③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 또는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101.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자동차 출고시 장착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사고 및 운행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차량
(현대자동차 : BlueLink, 기아자동차 : UVO, Benz : Mercedes me Connect, BMW : ConnectedDrive, LAND ROVER : InControl Service)



2. 회사의 사고 및 긴급상황 확인 및 조치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 전개사고 정보를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받은 경우 자동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 '1. 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3)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자동차제조사에 수집된 사고당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위 '1. 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 (2)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 (3)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6.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4' 내지 '6'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5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1)이 특별약관은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라 함은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고 무선통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제휴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승 관점수입니다.¹⁰²⁾

3. 보험료 할인

회사는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1) 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안전운전점수를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 (2) 위 (1)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6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1. 가입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장착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회사가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차선 이탈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또는 차선 이탈시 핸들을 조향하여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차선유지 지원장치(LKAS**)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6의 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말합니다. 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탑재되거나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차선이탈 경고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KAS : Lane Keeping Assist System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위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2.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해당 기간 최소 1,000km 이상 주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간 운행기록이 있을 수 없는 신차 등의 경우는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1,000km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휴 자동차제조사를 통해 안내 받으세요.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3)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위 '(1)'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위 '1. 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⑯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1)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장착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②회사가 전방충돌 경고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전방충돌 경고장치"라 함은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FCW*) 또는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하는 자동 비상 제동장치(AEB**)를 말합니다. 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탑재되거나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전방충돌 경고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FCW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AEB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위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3)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위 '(1)'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위 '1. 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 (2)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⑯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1)이 특별약관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②회사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회사가 요구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정보(부속품가액 등)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장치가 차량 출고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되어 회사가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3)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파손, 고장에 따른 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한 영상기록장치의 정보를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위 '1.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 (2)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 (3)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⑯ Hicar Green 서비스(전자약관 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가 계약자료를 인쇄물(종이)이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 받음으로써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상품입니다.

1. 적용 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료를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용어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을 말합니다.
1. 전자우편(E-mail)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 자료'라 함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 등을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 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 (2) 위 '(1)'에서 알려준 정보가 변동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3) 회사는 알고 있는 최근의 정보로 보험계약 자료를 송부하기 때문에 위 '(1)' 또는 '(2)'에서 알린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 자료의 교부

- (1) 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 자료를 자체 없이 교부합니다.
- (2) 회사는 보험만료일 이전 2회에 걸쳐 만기안내문을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며, 교부한 만기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교부합니다.
-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자료의 재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지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보험계약 자료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 및 회사의 권리와 의무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 기간에 각종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㉚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①연령 만30세 이상
 - ②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
 - ③최초 신규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1,600cc이하 일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 ④만 20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④'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①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
 - ②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2,000cc이하 일반 승용차 또는 1.5톤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위 '1. 가입대상'의 '(1)'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위 '1. 가입대상'의 '(2)'의 경우

①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아래의 소득입증 서류.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단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다. 사업등록이 안된 인적용역제공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라.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서

마.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②부양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차량등록증

④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위 '1. 가입대상'의 '(3)'의 경우

①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단, 간호계약으로 최근 2년이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③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2). ①'의 서류

(4)위 '1. 가입대상'의 '(4)'의 경우

①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②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2). ①'의 서류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㉑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연령 만65세 이상

(2)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3)위 '(2)'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최종판정이 운전능력진단 1~3등급인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결과지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인 경우.

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자 또는 온라인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¹⁰³⁾로 한합니다.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1. 가입대상'의 '(2)', '(3)'의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1)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

103. 경과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예) 교통안전교육 결과지 '평가일' 19.9.1일인 경우
'19.9.1일 ~ '22.9.1일까지



- ①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자가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인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 ②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자가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
- (2)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종료됩니다.
- (3)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III

보장 확대

1. 본인 및 가족 상해 담보

㉚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 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실제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 ① 실제손해액은 「<별표 1~5>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서 <별표 4>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 (4)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통약관 제7조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3 상해간병비·사망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 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위로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

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구 分 | 사망위로금 |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 | | |
|-------|---------|----------------|---------|---------|
| | | 1~3급 | 4~7급 | 8~10급 |
| 지급보험금 | 3,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②상해간병비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상해간병비를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 상해등급 1급 | 상해등급 2급 | 상해등급 3급 | 상해등급 4급~5급 | 상해등급 6급~7급 | 상해등급 8급~10급 |
|---------------|------------|------------|------------|---------------|---------------|----------------|
| 지급보험금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기명피보험자
-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③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 ④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4 상급병실·성형·치아보철 지원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②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 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급병실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

의 차액을 30일을 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보통약관 규정에 따라 병실료 차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특실 포함)을 말합니다.

② 성형비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부분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 부위 1cm당 10만원을 1회에 한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성형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¹⁰⁴⁾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¹⁰⁴⁾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¹⁰⁴⁾를 의미하며 둔부, 서예부, 복부¹⁰⁴⁾ 등은 제외합니다.

③ 치아보철비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치아보철이 필요한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의 치아보철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하고 있었던 경우(틀니 포함)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5 자녀 사고 피해 지원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104. 견관절(肩關節) 어깨뼈와 위팔뼈 사이의 관절로 좁은 의미의 어깨라고 부릅니다.

고관절(股關節) 골반과 넓적다리가 연결되는 관절로 엉덩관절이라고 부릅니다.

대퇴부(大腿) 무릎 위부분을 넓적다리라고 부릅니다.

하퇴부(下腿) 무릎 아래에서 발목 위까지를 말합니다.

족부(足) 발목 아래 부분을 말합니다.

둔부 엉덩이 부분을 말합니다.

서예부 넓적다리 부위 위쪽을 말합니다.

복부 배 부위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③ 보행중 등의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행중 등'이라 함은 교통 승용구의 운전 중 또는 탑승 중(자동차 및 그 부속장치 등에 매달려 있는 상태 등을 포함)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의 교통 승용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기차·전동차·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위로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구 分 | 사망위로금 |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 | | |
|-------|---------|----------------|---------|---------|
| | | 1~3급 | 4~7급 | 8~10급 |
| 지급보험금 | 3,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② 자녀간병비 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자녀간병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 상해등급 | | | | | |
|---------------|-------|-------|-------|-------|-------|-------|
| | 1급 | 2급 | 3급 | 4~5급 | 6~7급 | 8~10급 |
| 지급보험금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③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 손상을 입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이 이 특별약관의 <별표> 성장판과 관련된 상해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의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④ 스쿨존(School Zone) 사고 피해 지원금

피보험자가 스쿨존(School Zone)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위 '①'의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의 2배를 적용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①'의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스쿨존(School Zone) 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관서에서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이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말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 현재 만 18세 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성장판과 관련된 상해 내용

|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
| 2급 | 10.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급 |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급 | 8. 상완골 경부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5급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 6급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
| 6급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7급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㉖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등 피해 지원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마약·약물운전사고로 죽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관서에서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망위로금 및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위로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구 분 | 사망위로금 |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 | | |
|-------|---------|----------------|---------|---------|
| | | 1~3급 | 4~7급 | 8~10급 |
| 지급보험금 | 3,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 용어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마약·약물운전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후유장애가 남도록 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제43조또는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의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다. 뺑소니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고(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모두가 도주한 경우를 말함)
 - 라. 마약·약물운전사고 :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② 위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 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손해
 - ② 보통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한 손해
 - ③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
- (3) 위 '(2)'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를 위 '(2)'의 '①'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차량 손해

27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제②항에서 규정하는 사고 이외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단,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타자」는 제외),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타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제13호는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나.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6.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 따라 보험금이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8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지급하는 렌트비용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정기준액

가. 대차를 하는 경우

그)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아래의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 구분 | (초) 소형승용 (배기량 1,600cc이하) | 중형승용 (배기량 2,000cc이하) | 대형승용 (배기량 2,800cc이하) | 대형승용 (배기량 2,800cc초과) | 다인승승용 (법정승차정원 7~10인) |
|----|--------------------------------|----------------------------|----------------------------|----------------------------|----------------------------|
| 한도 | 70,000 | 110,000 | 210,000 | 350,000 | 140,000 |

ㄴ) 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를 직접 제공 가능

나.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다만, 1일 지급한도는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로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법정승차정원, 차의 구조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54쪽**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인정기간

가. 수리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함. 단, 외산차의 경우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부당한 수리지연 등 미수리로 연장되는 기간은 제외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3)회사가 보상할 위 '(2)'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보통약관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의 대차료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렌트자동차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회사는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해당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 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위 '(1)'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한 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 (3)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 (4) 회사가 보상할 위 '(1)' 및 '(3)'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 및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용어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교환가액'이라 함은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 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3.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㉙ 차량운반비용당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표준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그 밖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 타당한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사고 발생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중에서 「하이카 서비스특별약관」 중 견인서비스 및 「견인 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이용시 지원되는 서비스 초과 구간에 대한 비용. 단, 「하이카 서비스특별약관」 중 견인서비스 및 「견인 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이용 안 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나. 수리를 종료한 후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자가용 제외)가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여 피보험자의 주소지 또는 회사가 인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이 경우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구난형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자가용 제외)가 발급한 견인영수증(표준계산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① 피보험자동차가 「사고발생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함은 사고발생으로 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서스펜션, 스티어링 및 브레이크 이상으로 주행이 불가한 경우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를 지급합니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보통약관(대물배상 보험금지급기준의 대차료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㉚ 신차손해당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이하 「신차」라 함)이며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법규해설 156쪽에 따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동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이전에 최초로 신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인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차가액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

보험가입금액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②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피보험자동차를 고치는 때에는 보상하지 않음) 소요된 취·등록세 지급. 취·등록세가 지급되는 경우 신규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20만원을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지급.

③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3) 손해액의 산정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4) 회사가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 (5) 회사가 「신차가액 보험금」 및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③1 전손 시 대체차량 등록비용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과 종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위 「(1)」의 취·등록세가 지급되는 경우 신규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20만원을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회사가 위 「(1)」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 렌터카 운전당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손해를 입은 때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렌터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렌터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렌터카를 보통약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 「나. (1) 및 4. 헥차료」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회사는 위 「(2)」의 손해에 대하여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렌터카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렌터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4) 렌터카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렌터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규解설 154쪽에 의해 등록된 대여사업자를 통해 대여한 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동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위 「보상하는 손해 (1)」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위 「보상하는 손해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손해
 -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⑥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법률비용 / 다른 자동차 운전

③3)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형사 합의금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한 사고가 ①과 ② 또는 ②와 ③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한도액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사망하게 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법규해설 147쪽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단, 이 단서 중 7 내지 8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③ 위 '②' 이외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법규해설 160쪽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법규해설 147쪽 의 증상해를 입힌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 '(1)', '(2)'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 '(1)', '(2)'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위 '(1)'의 ①의 경우 : 3천만원 ② 위 '(1)'의 ②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thead><tr><th>피해자의 상해구분</th><th>상해등급 1급</th><th>상해등급 2급~3급</th><th>상해등급 4급~5급</th><th>상해등급 6급~7급</th><th>상해등급 8급~14급</th></tr></thead><tbody><tr><td>기본형</td><td>2,0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d>200만원</td><td>-</td></tr><tr><td>고급형</td><td>3,000만원</td><td>2,000만원</td><td>700만원</td><td>500만원</td><td>-</td></tr><tr><td>최고급형</td><td>3,000만원</td><td>3,000만원</td><td>700만원</td><td>500만원</td><td>100만원</td></tr></tbody></table> | 피해자의 상해구분 | 상해등급 1급 | 상해등급 2급~3급 | 상해등급 4급~5급 | 상해등급 6급~7급 | 상해등급 8급~14급 | 기본형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 | 고급형 | 3,000만원 | 2,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 | 최고급형 | 3,000만원 | 3,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 피해자의 상해구분 | 상해등급 1급 | 상해등급 2급~3급 | 상해등급 4급~5급 | 상해등급 6급~7급 | 상해등급 8급~14급 | | | | | | | | | | | | | | | | | | | |
| 기본형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고급형 | 3,000만원 | 2,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최고급형 | 3,000만원 | 3,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③ 위 '(1)'의 ③의 경우 : 3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형사 합의금 | (4) 한 번의 사고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 ② 변호사 선임비용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제로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5백만원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¹⁰⁵⁾ 가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¹⁰⁶⁾ 제외) ②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 법규해설 160쪽)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 법규해설 160쪽)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2) 위 (1)'의 약식기소나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¹⁰⁷⁾ 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③ 벌금 비용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벌금비용은 매 사고마다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액을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II」에서의 피보험자 중 해당 사고 발생당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105. 공소(公訴)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06. 기소(起訴) 검사가 법원에 정식 서면고발하는 것으로 공판기소와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공판기소는 직접피의자가 재판장에 나가서 판사에게 재판받는 것이며 약식기소는 사건을 정리해 놓은 서류만으로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107. 구류 또는 몰수

“구류”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교도소에 구치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몰수”라 함은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 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54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⑥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미야·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 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도주를 원인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② 운전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③ 승낙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5.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위 '2.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형사합의금
 - 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나.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라. 공탁확인서(단, 공탁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② 변호사 선임비용
 - 가.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벌금비용
 - 가. 확정판결 증명서 (단, 악식기소된 경우 악식명령서 및 벌금납입 영수증)
 -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2) 위 '2. 보상하는 손해' (1)의 (2)'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변호사 선임비용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2. 보상하는손해 (2)의 ②'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벌금비용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2. 보상하는손해 (2)의 ③'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4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회사는 위 '(3)'의 손해에 대하여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다른 자동차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사고 당시 다른 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5) 다른 자동차 또는 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¹⁰⁸⁾로서 피보험자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1) 및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8. 자가용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로써 판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사업용, 이륜차 제외)

-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⑥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
 - ⑦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2)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3)'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단, 제8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에서 정하는 손해. 단, '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 경우 보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규정의 사고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자녀 운전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1) 내지 (3)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이하 '자녀'라 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①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 ②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 ③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용어정의

-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 ②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자녀의 배우자'라 함은 자녀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자녀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⑯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기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기액 중 낮은 기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3)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후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인정 기간은 대물배상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 (4)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5)위 '(1)'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전기자동차

이 보험약관에서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법규해설 159쪽)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36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파손되어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 부분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새 부분품의 가액

-

감가상각 적용 후 새 부분품 가액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7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정격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에 대하여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 ② 피보험자가 감전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 ③ 피보험자동차의 중요한 부품의 전기적 손해

용어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전기자동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8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책임개시일의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지원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3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IV

기타

1. 긴급출동 서비스

39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별표> 「하이카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높, 진흙지대 등), [도서](#)⁹⁷⁾·산간지역인 경우와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별표> 「하이카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6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 가입의 제한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등 고려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허위 또는 조작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하이카서비스

| | |
|--------------------|--|
| 배터리 방전시 시동 서비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피보험자동차 배터리(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2. 피보험자 요청에 따라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 견인 서비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가 입고된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견인하여 드립니다. (회당 1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타이어 평크 수리 및 교체 서비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피보험자동차 지면에 닿는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의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평크 1개 부위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평크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의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2. 위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평크 1개를 초과하여 수리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3. 타이어 평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거나 피보험자의 요청시 공기 주입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 당시의 훈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훈의 교체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피보험자동차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는 제외) 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2. 외산차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3.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구난 서비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2.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
|----------|---|
| | <p>✓ 용어정의</p> <p>(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③ 세이프티 로더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p> <p>(2) 이 특별약관에서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라 함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기 바로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p> |
| 구난 서비스 | |
| 비상급유 서비스 | <p>피보험자동차의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기간 중 2회,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드립니다.</p> <p>(휘발유 및 경유에 한하여 3리터 초과비용은 피보험자 부담)</p> |
| 휴즈교환 서비스 | <p>피보험자동차의 휴즈 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새 휴즈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엔진 림 릴레이박스의 휴즈 교환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p> |

① 견인 서비스 확장 추가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특별약관의 『견인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 | |
|--------|--|
| 견인 서비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총 6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6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Road 차량진단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로서, 피보험자동차가 OBD-II 시스템¹⁰⁹⁾이 장착된 국산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피보험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불명확한 원인으로 시동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피보험자가 차량진단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휴대용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109. OBD-II (On-Board Diagnostic version II) 시스템

차량 고장이 발생한 경우 진단 및 고장 정보를 검색 가능한 전자적 진단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자동차제조사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상기의 차량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차량진단 후 피보험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특별약관의 <별표> 하이카서비스와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합산하여 보험기간 중 5회에 한하여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④0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친환경자동차)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친환경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법규해설 159쪽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별표> '하이카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자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높, 진흙지대 등), 도서·산간지역인 경우와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별표> '하이카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6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7. 특별약관 가입의 제한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등 고려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허위 또는 조작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하이카서비스

운전자
병위

보험료
할인

보장
확대

기타

| | |
|-------------------------|---|
| 자동차 방전시 응급지원 서비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피보험자동차 고전압배터리(리튬이온전지 등) 방전(수소전기차동차의 경우 수소 연료 소진시를 말함)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까지 장소까지 10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10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피보험자동차 시동용(정프)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요청에 따라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 견인 서비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10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가 입고된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견인하여 드립니다. (회당 10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4륜차량 타이어의 점검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타이어 평크수리 및 교체 서비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피보험자동차 지면에 닿는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의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평크 1개 부위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약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평크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의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위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평크 1개를 초과하여 수리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타이어 평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거나 피보험자의 요청시 공기 주입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 당시의 훈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훈의 교체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피보험자동차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는 제외) 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외산차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구난 서비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p>용어정의</p> <p>(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③ 세이프티 로더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p> <p>(2) 이 특별약관에서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라 함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기 바로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p> |
| 휴즈교환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휴즈 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새 휴즈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휴즈 교환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친환경자동차)(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로서, 피보험자동차가 OBD-II 시스템이 장착된 국산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피보험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불명확한 원인으로 시동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피보험자가 차량진단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휴대용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 (2) 자동차제조사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상기의 차량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차량진단 후 피보험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특별약관의 <별표> 하이카서비스와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합산하여 보험기간 중 5회에 한하여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 보험료 납입

④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맷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¹¹⁰⁾

-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10. 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 (1)이 특별약관 '3.(2)'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2)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④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 (1)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수 없습니다.
- (2)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함)로 합니다.
- (3)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다가오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 (4)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 (1)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 (4)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 (1)이 특별약관 '3.(4)'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2)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 납입방법 | 미납입보험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 비연속 2회납 | | | | | | 1개월 |
| 연속 납 | 2회납 | 4개월 | | | | |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 |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④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3. 기타

④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③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④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 '(1)'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3.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규정에도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 보상하는 손해'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5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2)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위 '1. 보상하는 손해의 (2)'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6인승 이하의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구급용 자동차(앰뷸런스) 또는 장애인 택시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46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47)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순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순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1)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고,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순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순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위 '(1)'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3)' 내지 '(4)'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법규해설 152쪽**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 (4)위 '(1)'에도 불구하고 '(3)'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 (1)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②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 (1)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②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③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 ④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2)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그 밖에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2)위 '(1)'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3. 지정대리 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8) Eco Point 리워드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 수리 시 리싸이클(재활용)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에 참여하게 되어 지구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하는 상품입니다.

1. 특별약관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따라 보상받는 피해 자동차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받는 피보험자동차 중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 <별표>의 대상부품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와 제휴한 정비업체에서 신품이 아닌 리싸이클(재활용)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적용」에 따라 리싸이클(재활용) 부품으로 교환한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대상·차종부품 및 Eco Point(에코 포인트) 적립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co Point를 피보험자에게 적립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리싸이클(재활용) 부품」이라 함은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서 검사, 세척,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종고 재활용 부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Eco Point(에코 포인트)」라 함은 리싸이클(재활용) 부품 사용으로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피보험자에게 적립해드리는 포인트로서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보통약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현금으로 보상(1포인트는 현금 1원으로 환산)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따라 보상받는 피해 자동차의 경우 피해 자동차 소유자이며, 피보험자동차의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험금의 동시 환입

- (1)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보험금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2) 차량 수리 후 부품의 하자로 신부품으로 재수리 요청 시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5. 리싸이클 부품 제공이 안 되는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적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부품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이때 Eco Point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리싸이클(재활용) 부품의 재고가 없거나 리싸이클 부품의 배송처가 도서·산간 지역인 경우
- (2) 리싸이클(재활용) 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Eco Point 및 대차료 등 포함)이 신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 (3) 피보험자가 리싸이클(재활용) 부품 사용을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품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6. 보통약관 적용의 배제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대상·차종부품 및 ECO POINT(에코 포인트) 적립기준

| 구 분 | 내 용 |
|------|--|
| 대상차종 | • 최초 신규 등록일부터 8년이 경과한 자동차 |
| 대상부품 | • Part 1 : 프린트-도어, 리어-도어, 본네트, 트렁크-페널 • Part 2 : 프린트-범퍼, 리어-범퍼, 프린트-휀더, 전조등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부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t 3 : 사이드-미러, 테일-램프 Part 4 : 안개등, 전·후방주차보조센서, 룸미러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법규해설 159쪽)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co Point 적립기준 | <p>(1) Eco Point는 매 사고마다 교환하는 리사이클(재활용) 부품별로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소형A</th> <th>소형B</th> <th>중 형</th> <th>대 형</th> <th>다인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중고 부품</td> <td>Part1</td> <td>40,000</td> <td>50,000</td> <td>50,000</td> <td>70,000</td> </tr> <tr> <td>Part2</td> <td>20,000</td> <td>30,000</td> <td>30,000</td> <td>20,000</td> </tr> <tr> <td>Part3</td> <td>10,000</td> <td>10,000</td> <td>20,000</td> <td>20,000</td> </tr> <tr> <td>Part4</td> <td></td> <td></td> <td>10,000</td> <td></td> </tr> <tr> <td>재제조 부품</td> <td></td> <td></td> <td>30,000</td> <td></td> </tr> </tbody> </table> <p>(2) 한 사고로 2개 이상의 리사이클(재활용)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Eco Point를 합산합니다.</p> | 구 분 | 소형A | 소형B | 중 형 | 대 형 | 다인승 | 중고 부품 | Part1 | 40,000 | 50,000 | 50,000 | 70,000 | Part2 | 20,000 | 30,000 | 30,000 | 20,000 | Part3 | 10,000 | 10,000 | 20,000 | 20,000 | Part4 | | | 10,000 | | 재제조 부품 | | | 30,000 | |
| 구 분 | 소형A | 소형B | 중 형 | 대 형 | 다인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고 부품 | Part1 | 40,000 | 50,000 | 50,000 | 7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rt2 | 20,000 | 30,000 | 30,000 | 2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rt3 | 10,000 | 10,000 | 20,000 | 2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rt4 | |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제조 부품 | | | 3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 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 제②항(법규해설 157쪽)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법규해설 157쪽)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 제③항(법규해설 157쪽)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환입

- (1)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2. 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6.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OEM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OEM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5 법규해설 157쪽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0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2. 증명서류의 제출

(1)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라 함)을 제출하여 위 '1. 가입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위 '(1)'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를 위 '(1)'의 장애인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장애인 전용보험으로의 전환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2. 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1. 가입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2)위 '(1)'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됩니다.

4. 전환 취소

(1)보험계약자가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자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전환 취소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납입영수증에 일반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됩니다.

(2)위 '(1)'에 따라 전환 취소된 경우, 재전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년도에 위 '(1)'에 따라 전환 취소한 경우, 당해연도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납입영수증에 일반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됩니다.

5. 준용규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51 Eco 마일리지 환급금 대체사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정산

- (1)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3)」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4)」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2) 회사는 송부 받은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금액이 있는 경우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및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의 7. 보험료 정산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액 전액을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정산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특별약관 적용 제외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갱신계약을 회사와 체결하지 않는 경우
- ②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보험료 정산금액을 환급받기를 요청한 경우
- ③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위 「2. 보험료 정산」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2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1. 대물배상의 적용대체 등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물배상과 종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통약관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대물배상의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을 준용합니다.

3. 가입금액의 선택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소득세법 제59 조의 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18 조의 4 (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1 조의 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 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별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 조(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 조(장애아동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규 해설집

약관에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인용된 법규 조문입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규는 법령명 내림차순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된 경우 약관의 조문은 개정된 법령을 따릅니다.

| | |
|---|---|
| ㄱ | 개인정보 보호법 <p>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정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 | <p>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 <p>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 <p>개인정보 보호법</p> <p>⑥ 개인정보처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p>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p> <p>① 개인정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p>② 삭제 <2013. 8. 6.></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위손되거나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 축정을 요청하거나 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키·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간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거나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 |
|------------------------|---|
| <p>国民기초 생활보장법</p>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소급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보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 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 <p>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p> | <p>제17조(적합성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금융상품계약체결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번역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증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대출성 상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 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제19조(설명의무)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른 위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 · 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 이자율 · 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 · 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 · 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 · 제휴서비스등의 이해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 · 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 · 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빼뜨려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 ·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p>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p> | <p>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p> <p>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당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당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저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당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p>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p>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p> <p>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계약 체결을 경우(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 <p>제36조(분쟁의 조정)</p> <p>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p> <p>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p> <p>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p> <p>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

| | | |
|---|-----------------------|---|
| ㄱ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p>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p> <p>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 ㄷ | 도로교통법 | <p>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p> <p>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성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 | | <p>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p> <p>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을 운전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p> |
| | | <p>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p> <p>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 | <p>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p> <p>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방(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p>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 | | |
|---|-------|--|
| ㄷ | 도로교통법 | <p>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 | | <p>제148조(벌칙)</p> <p>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 | <p>제148조의2(벌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죽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악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ㅁ | 민법 | <p>제777조(친족의 범위)</p> <p>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 | | <p>제1000조(상속의 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 | | <p>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 ㅂ | 보험업법 |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p> <p>가. 국가</p> |

| | | |
|---|----------------------|--|
| | 보험업법 | 제2조(정의)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ㅅ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산업 재해 등 근로자의 업무 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
| | 소득세법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 | |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한으로써 받는 본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범인의 주수증회·사원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판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교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등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응시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p>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p> <p>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보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p>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p>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p> <p>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나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p>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p>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등)</p> <p>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면서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p>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p>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p> <p>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p>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p>제39조(무료 열람권)</p> <p>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p>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p> <p>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어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의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p>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p>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p>제8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p> <p>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p> |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p>제8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p> <p>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령 등을 다른 차령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밀스도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
| 제29조(등록기준) |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 |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 <p>① 사업용 자동차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일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 차지시장·특별차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차지시장·특별차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차지시장·특별차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p>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p> <p>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
| 의료법 |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p>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p> |
| 의무보험 | | <p>「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 3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 1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2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p> |
| × | 자동차 관리법 |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유통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유통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작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 | |
|----------------------------|--|
| 자동차관리법 | <p>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p> <p>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p> <p>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활용업을 말한다.</p> <p>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정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p> <p>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p> <p>11. “자동차의 투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p> <p>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p> <p>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멀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기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p>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p> |
| 제8조(신규등록) | <p>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여 산 사람을 갈음하여 자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
| 제13조(발sold등록) | <p>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맘sold등록(이하 “맘sold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맘sold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p> <p>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p> <p>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p> <p>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p> <p>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p> <p>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p> <p>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p> <p>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낮아使之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맘sold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범위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p> <p>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
|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 <p>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부품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p>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 <p>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부품제작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
| | | <p>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②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인증대체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정 | [별표 6의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 | <p>1. 성능기준 1)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아래 3)에 따라 작동증일 때는 언제나 주행 중인 자동차가 직선부와 다양한 곡선부(내 측차선의 꼭대기) 250m 이상인 곡선부로 구성된 도로에서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행 중인 차로의 차선을 가로지르는 경우 운전자에게 아래 제3호 1)에 따른 경고를 제공할 것. 다만,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다. 2)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고장이 있는 한 언제나 별표 2의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지속적으로 등등시킬 것 3)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제2호에 따라 운전자가 수동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기능을 해제시키지 않는 한 최소한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에서 작동될 것 3. 식별표시 기준 1) 차로이탈경고는 운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의 가) 또는 나)를 사용하여 경고할 것. 다만, 사각경고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로이탈경고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를 점멸시킬 수 있다. 가) 시각, 청각 또는 촉각경고 중에서 2개 이상의 수단 나)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하는 방향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촉각 또는 청각경고 중 어느 하나의 수단</p>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 제15조(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등) | <p>①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의장부품 2. 등화부품 3.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p> |
|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 제2조(정의) |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수가액(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중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p> |

| | |
|---------------|---|
| X |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 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
| | <p>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p> <p>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와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 | <p>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p> <p>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순회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멀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하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p>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 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p> |
| | <p>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p> <p>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증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야하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
| | <p>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p> <p>① 보험회사들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 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p> |
| | <p>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p> <p>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순회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수가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p> |
| 장애인복지법 | <p>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p> <p>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p> |

| | | |
|---|--|---|
| X | 장애인복지법 | <p>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p> <p>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 | 전자서명법 | <p>제2조(정의) 제2호, 제3호 및 제 10호</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기ай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기압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여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 E | 통계법 | <p>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p> <p>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을 출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경제 · 사회현상의 연구 · 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경제 · 사회현상의 연구 · 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p>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p> <p>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 G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p>제57조(차량충당조건)</p> <p>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p> |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p>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정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 | 형사소송법 |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경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자체없이 경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형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및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하거나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한 내용에 대해 통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77-1001 • 홈페이지 : direct.hi.co.kr
- 서면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화재보험 개인정보관리·보호담당자 앞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학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제 또는 사인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77-1001 • 홈페이지 : direct.hi.co.kr
- 서면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화재보험 개인정보관리·보호담당자 앞

- 신청자 제한 : 신규 가입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77-1001 • 홈페이지 : direct.hi.co.kr
- 서면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화재보험 개인정보관리·보호담당자 앞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1000 www.allcredit.co.kr
- 한국신용정보(주) 1588-2486 www.mycredit.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 02-3771-1000 www.creditbank.co.kr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규정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02-3701-801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63
(실무담당자 : 02-3701-8923)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02-3702-8679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6층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02-3145-51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 편리한 보험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계약조회/변경



보험계약대출



증명서 발급



사고접수



현대해상

- 홈페이지 <http://direct.hi.co.kr>
- 콜 센터 1577-1001(보험가입 및 안내)
1588-5656(고장출동 및 사고접수)
- 스마트폰 QR코드 스캔 > 스마트 고객센터 다운로드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참여마당

* 본 약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콜센터(1899-6782)로 연락주십시오.

고객인증 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협약글로벌고객만족도조사
영역의 최강 협약2019 글로벌고객만족도조사
부문 1위
장기보험 혁신으로 1위
현대해상다이렉트 1위2019 자주가는성자수
순례보험 부문 1위2020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장기보험 부문 1위
디렉트자동차보험 부문 1위2020 글로벌보험 대상
현대해상다이렉트 1위2020 우수콜센터 인증
현대해상다이렉트 1위

H 현대해상화재보험

03183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대표전화: 1899-6782 | direct.hi.co.kr

자동차상품파트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21957호(유효기간 2022.6.21~2023.6.20)